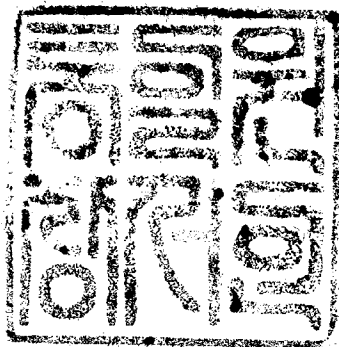


통일과정연구 92-Ⅳ

# 통독2주년 보고서

1992. 10



통 일 원

본 보고서는 통일 2주년을 맞이한

독일의 각 분야별 통합현황을

주독대사관에서 중간결산한 보고서임.

# 목 차

1. 정치분야 통합	1
1-1 행정체제 개편	1
1-2 사법체제 개편	7
1-3 구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11
1-4 과거 청산	16
2. 군사분야 통합	22
3. 경제분야 통합	25
3-1 구동독의 경제재건	25
3-2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32
3-3 소유·재산권 문제	38
3-4 과학연구 및 기술분야 재편	44
4. 사회분야 통합	47
4-1 노동현황	47
4-2 생활수준	50
4-3 사회보장제도 확립	51
4-4 주택문제	55
4-5 환경오염 제거 문제	58
4-6 의료·보건 분야	61
5. 교육분야 통합	63
6. 체육분야 통합	67
7. 언론분야 통합	70
8. 동·서독간 심리적 이질성 극복 문제	73

# 1. 정치분야 통합

## 1-1 행정체제 개편

### 가. 행정조직 재편

#### ○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인력 감축

-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중 우선 감축대상은 다음과 같음.
  - Stasi 등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자
  - 구동독 공산당(SED)과 대중 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 자
  - 시민적, 정치적 재권리에 관한 국제협약('66.12.19)에 보장된 인권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48.12.10)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 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자
  - 더 이상 통독후에는 행정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과도기적 경과기간(50세 이하는 6개월, 50세 이상은 9개월)동안 과거 급여의 70%를 받으며 전직 준비, 그 이후에는 자동 실직됨.
  - 실직자 300여명은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조치의 위헌 여부를 제소했으나 패소('92.3.12 결정)
  - 과거 200만의 구동독 공무원중 168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
- 잔류공무원중 앞으로 몇명이 정식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지는 각 연방부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예산운용의 가능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임.

- 계속 근무가 확정되는 자들은 공무원 법에 의한 제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고, 구체제와 관련된 과거 경력이 없는지,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받음.

- 통독이후 공공기관 종사자 현황

(단위 : 천명)

	독 일 전 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o 정규 공무원 전체	6,357	4,669	1,688
- 전업 종사자	5,338	3,811	1,527
- 시간제 종사자	1,019	385	161

o 공무원 법 (Beamtenrecht) 등 관계법령 제정

- 통합조약(Einigungsvertrag)에 따라 우선 연방 공무원법이 신설5개주에도 도입됨. 각 신설 5개주는 '92.12.31까지 주공무원법(Landesbeamtenrecht)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시까지 과도기간 동안 연방공무원법의 규정과 통합 조약에서 합의된 별도 규정이 적용됨.
- '91.1.9 연방내무성에 의해 제정된 “ 구동독 공무원중 해고되지 않고 인수되는 자들에 요구되는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 (Verordnung Ueber die Bewahrungsforderungen fuer die Einstellung von Bewerben aus der oeffentlichen Verwaltung im Beitrittgebiet in ein Bundesbeamtenverhaeltnis)이 신설5개주에도 그대로 적용됨.
- 이 규정에 의하면 새로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들은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Bewahrungszeit)을 갖기로 되어 있는바, 고위직(hoehere Dienst)은 4년, 고급직(gehobene Dienst)은 3년, 중급직(mittlere Dienst)은 2년, 단순직(einfache Dienst)은 1년임.
- 유예기간중 과거 전력이나 자질면에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직급에 인명됨.

o 잔류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법적인 고용관계

- '91.1.1을 기해 주요한 고용관계 제 법규는 거의 그대로 신설5개주에도 도입하여, 과거 서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적용되던 재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계약 관계가 형성됨.
  - 다만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91.3.5 임금협상을 통해 구동독지역 보수수준은 구서독지역의 60%선 합의
  - '92초 노·사 협상에 의거 구서독지역 수준으로 단계적인 봉급인상 예정 : '92(70%), '93(80%) 수준

나. 신설 5개주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 o 능률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연방, 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고되지 않고 인수되는 과거 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해 연방 및 각 주 공무원 연수원 주관으로 필수적인 교육 실시
  - 특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법치 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념고취등 정신교육도 중요함.
    - 행정법, 헌법, 재정학, 행정학(인사, 재무관리) 등이 주요 과목
- o '90말 현재 15,000명, '91말 현재 30,000명에 대해 재교육 완료
  - 이와 별도로 35,000명의 체신 공무원, 1,360명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됨.
  - 특히 각주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방 재무성에서 직접 23개 교육 프로그램은 작성, 실시함.
- o 연방정부는 신설 5개주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조치를 함.
  - 각 주의 공공행정 전문학교와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에 더 많은 공무원 예비자를 양성토록 함.
  - 연방 중앙공무원교육원(Bundesakademi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의 교육계획에 신설5개주 공무원 교육 포함
    - 특별반 운영(민주법치국가 질서와 전문 지식 계고를 위한 목적)

## 다. 구서독지역 공무원의 신설 5개주 파견·전보 장려 조치

### o 봉급상의 혜택

- 만약 파견되는 공무원이 신설 5개주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보조급(Zulage)을 지급
- 또한 '91.4.9 연방 내각 결의로 구 동독에서 행정체계 구축에 참여한 구서독 공무원에게 그 근무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금 산정시 각 근무기간에 대해 2배의 근무기간 산정을 배려

### o 이전에 따르는 생활비용 보상(Aufwandsentschaedigung)

-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91.3.20 연방하원의 결의(내무성 건의)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매월 1,500~2,500 DM을 지급

### o 여행경비, 별거수당 지급

- 파견일 경우 기혼자는 한달 2번, 미혼자는 한달에 1번의 귀향에 따른 여행경비와 별거수당(14일까지 직급에 상응하는 여비와 같은 액수)을 받음.

### o 승진상의 혜택 부여

- '91.4월말 연방인사위원회(Bundespersonalausschuss)는 구동독지역 파견 공무원에게 경력 평정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결정함.
  - '91년말까지 파견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구동독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자는 경력 평정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함.
- 또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력상 더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는 구서독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선발심사, 교육, 경력에 필요한 자격 확정 등 인사상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동독지역에 전보 조치함.

○ 퇴직한 공무원 파견

-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도 '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구등독지역 행정체계 재건에 참여토록 함.

· 이 경우 과거 퇴직시와 상응하는 직급에서 임금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데 연금 신청권은 계속 보장 받음.

· 아울러 구등독지역에서 근무한만큼 연금년도 산정에 가산(최고 75% 까지)

○ 구서독에서 구등독지역 공무원으로 전보·파견된 현황('92년 4월 현재)

(단위 : 명)

	총 인원	전 보	파 견
○ 연방정부기관(서) ⇒연방정부기관(등)	13,679	4,637	9,042
○ 연방정부기관 ⇒주정부기관	1,322	299	1,023
○ (서독)주정부기관 ⇒(등독)주정부기관	8,375	2,995	5,380
총 계	23,376	7,931	15,445

라. 지방자치 행정체계 구축

○ 통독과 더불어 구등독지역에는 비로소 1950년대 없어졌던 신설 5개주가 부활되고 구서독지역의 행정단위 기준(Gemeinde, Staedte, Kreise)에 따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였음.

- 연방내무성과 구서독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물자 지원,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구서독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구서독의 각 지방행정기관의 연합회는 행정의 연방주의에 의거 각 지방 행정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구등독에 신설된 각 Staedte(중·대도시에 해당), Gemeinde(소도시·읍에 해당), Landkreise(군에 해당)의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서독으로부터의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있음.



- 통독이전인 '90년초부터 구서독측은 구동독지역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형태의 행정지원을 제공해 왔음.
  - 이미 동·서독간 교류협력기간중 맺어졌던 도시간 자매결연(Staedtepartnerschaft) 통로를 통해 주로 초기에는 물자지원을 제공했음.
    - 통신수단(전화, 팩시밀리), 각종 정보유인물 제공
  - '90년대 중반부터는 자문, 세미나 강사 파견, 행정인력 파견 등 인적 지원이 증가하였고, 건축자재, 자동차, 사무용 집기 등의 지원도 행해짐.
  - 통독이후에는 통합조약 제15조("연방정부와 구서독의 주정부는 신설 5개주 행정체계 확립에 행정지원함")에 따라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짐.
    - 행정자문단의 조직·파견
    - 상주 전문인력 파견 : 연방내무성은 "인력파견에 따른 보조기금"을 '91.'92 각각 1억 DM씩 계상함.
    - 구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지원
  - 상기 행정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내무성, 각주내무성, 각지방행정기관 연합회측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내독관계성의 해체와 함께 내무성이 인력을 흡수하여 "동독 재건 실무단" 편성, 각 주 내무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 자문
    - '90.7.29 서독에 각 주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기존의 동·서독간 도시 자매결연 형태로는 구동독의 중·소도시가 망라되어 있지 않아(구동독의 5만 이상 도시는 거의 서독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음) 서독측으로부터 충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서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서독의 주가 구동독의 어느지역을 관할하여 행정지원할 것인가를 새로 결정함.

## 1-2 사법체제 개편

### 가. 사법조직의 개편

#### ○ 주 헌법재판소의 신설

- 구동독에서는 사법부가 헌법 규제기능을 갖지 않았으며, 국가권력기관인 국가평의회 또는 인민의회에서 법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
- 서독 기존의 각 주는 연방의 모델에 따라 각 주의 헌법규범을 척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이념의 보장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 운용
- 헌법규범의 정치적 통제는 더 이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독 신설 5개주에서의 헌법재판소 설치는 각 주의 연방주의에 의한 헌법적 책무임.

#### ○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의 폐지

- '90.10.3을 기하여 동독의 헌법기관이었던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은 폐지되고, 그 청산작업은 연방법무부와 연방재판소 또는 연방검찰청이 분담하여 수행
- 최고재판소에 상고 또는 항소종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연방의 최고재판소들로 이송되며, 제1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주정부 소재 지구재판소의 특별부에서 심리 계속
- 대검찰청에서 담당하던 사건은 연방검찰청 또는 각 주의 검찰청에서 인수

#### ○ 동독 법무성의 해체

- 동독법무성은 해체되어 각주정부 산하의 주법무성으로 재편됨.
- 연방법무성은 동베를린의 구법무성 청사에 과도적으로 외청을 설치하고 법무부 해체, 각 주 법무부 창설, 통일적인 입법작업 등을 통괄

0 재판소 및 검찰청의 관할과 조직개편

- 신설 각 주에 서독과 같은 심급의 법원조직(구재판소 - 주재판소 - 주고등재판소)을 정비
- 검찰도 서독과 같이(주검찰청 - 주고등검찰청으로) 정비
- 소위 일반적 적법성 감독의 권한, 민사·가사·노동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관여권 등 종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폐지되고, 그 직무상 감독도 과거의 대검찰청 대신 각 주 법무부에서 행사

0 행정·재정·노동·사회재판소 등 특별법원의 설치

- 동독에는 행정·재정·노동·사회사건 등을 독자 관할하는 재판소는 존재치 않았으며 특히 행정사건, 사회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관념도 없었음.
- 사회복지국가와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통일이념상 서독의 모델에 따라 각 특별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설 각 주의 당연한 과제

0 변호, 공증기능의 한시적 존속

- 서독의 연방변호사법, 연방공증인법이 연방단일법으로 정비 될때까지 과도적으로 동독의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관계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 계속
- 변호사, 공증인은 서독의 변호사, 공증인과 동등한 지위 내지 권한을 부여하되, 동독인가 변호사의 서독지역으로의 인가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종전의 법무부에서 행하였던 직무감독권은 각주의 법무부로 이관되고, 징계재판 등의 최종심은 연방재판소에서 관할

나. 구동독 판·검사 심사 및 재임용

- 0 동독의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불법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였던 판·검사들을 사법으로부터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법치국가 수립을 위한 통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

- 각 신설 5개주와 베를린주는 구동독에서 '90.7.22 공포한 법관선출위원회법에 의거 6명의 의원(주정부 및 지방의회 의원)과 4명의 판사(또는 검사)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검사임용위원회 설치하여 적격자를 심사 선발
  - 심사기준(각 주마다 조금씩 다름)
    - 구체제의 과거전력과 관련한 정치적·도덕적 하자유무, 법률전문지식 소지 유무, 객관적·독립적 판결능력 유무, 재교육에 대한 준비자세
  - 법관선출위원회를 통과한 법관들도 3~5년의 시보기간을 거친후 종신 법관으로 임명
- '92년 1월 현재 구동독 출신 판사·검사를 각각 621명, 382명을 재임용
  - 과거 Stasi 협력자, 구동독 공산당원, 지구법원장 및 검찰청장 등은 재임용에서 탈락

다. 구동독지역 법조인력 부족과 연방정부 지원 조치

○ 법조인력 소요현황

(단위 : 명)

	총소요인원	선발가능 구동독인력	추가 소요인원
법 관	5,000	600 - 700 (1,200)	4,000 이상
검 사	1,200	400 - 450 (900)	700 이상
법률집행인 (Rechtspfleger)	3,000		3,000

○ 연방정부 지원 조치

- '92년 1월까지 730여명의 판·검사를 파견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의 50%를 연방정부가 부담
- 구서독 주정부에서 실시한 판·검사 재교육에 50%를 연방정부가 부담
- '91.2.27 연방각의에서 1억 2천만 DM 상당의 지원계획 발표
  - 은퇴한 판·검사·법무행정직·법률집행인을 동독지역에 파견 : 연금(75%), 사례금(35% 이상) 지급, 이전비용, 여행경비 보전

· 기금조성 : 구서독지역에서 등독지역 사법기관에 채용을 신청한  
 법조인들에게 서독지역에 준하는 봉급지불을 위한 기금

※ 구동독 사법체계 개편 현황(1992년 1월 1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판 사	검 사	법무행정직 (hoehere Justizdienst)	법률집행인 (Rechtspfleger)
1. 총 근무인원	1,716	730	101	1,147
2. 전체 근무인원 구성				
○ 구동독 출신으로서 재임용	621	382	9	756
○ 신규채용				
- 사법고시 합격	459	123	4	74
- 법대 졸업자	-	-	15	2
○ 구서독지역에서 파견	577	156	44	291
○ 구서독지역에서 전보	14	21	26	-
○ 정년퇴직자 재채용	32	7	3	14
○ 구동독 출신중 현재 심사중인자	43	28	-	-
3. 근무지별				
○ 일반법원	1,247	-	-	980
○ 검 찰	30	639	2	72
○ 특수법원				
- 행정법원	53	-	-	-
- 노동법원	180	-	-	-
- 사회법원	17	-	-	-
- 재정법원	5	-	-	-
○ 주 법무성	100	22	94	75
○ 구서독주 파견	129	69	-	20
4. 신규채용 예정 인원	2,746	941	275	1,891

### 1-3 구 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 가.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처리

- 과거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은 다자간 542건, 양자간 2,551건으로 총 3,000여건에 이룸
  - 과거 동독정부는 서독과의 외교경쟁에서 독자적인 국가적 승인을 최대의 외교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외국과 될수 있으면 많은 조약·협정을 체결하려 하였음.
  - 정치·군사, 경제·무역, 환경, 문화·과학, 보건, 영사, 노동·사회(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분야 등에 이르는 협정중 서방제국과는 다자간 협정을 주로 맺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이전 동구권 및 제3세계 국가와의 양자간 협정 처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동독이 통독전에 맺은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통합조약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양자간 조약·협정의 경우는 통일정부가 조약체결 당사자들과의 협의(Konsultation)를 거쳐 계속 유효(Fortgeltung)·조정(Anpassung) 또는 효력상실(Erloeschen) 여부를 결정함.
  - 이 작업은 5가지 기준에 의해 진행됨.
    - 신뢰보호
    -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
    - 서독측의 계약상 의무
    - 자유·민주·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따라
    - EC의 관할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독일이 가입하려고 할때 모든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를 함.

- 그러나 통합조약 내용은 단지 외국의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앞으로 협상을 거쳐 처리할때의 기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90.10.3 통독시점까지 동독이 맺은 조약과 협정으로 확정된 기존권리는 과거 서독이 맺은 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더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여기에는 통합조약 8조와 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동화(Rechtsangleichung)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봄.
    - 즉 기본적으로 서독이 맺은 조약과 협상이 우선하여 동독지역에까지 확정 적용됨.
    - 다만 동독이 맺은 조약·협상 내용의 계속 유효성 여부는 통합조약 제9조의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서독의 법령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유효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통일된 독일과 새로운 조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
- 현재 연방외무성은 상기 원칙에 의거 각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각 주무부처와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확정할 계획임.
  - 국경문제와 관련된 구동독의 조약들은 통독후 새로운 독·소간 독·폴간 우호·협력 조약을 통해 그 내용이 계속 유효함.
  -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조약·협정 등은 '90.10.3을 기준으로 수지결산 잔액(Saldo)을 확정하여 새로운 의무이행과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여 새로운 조약·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 UN 및 그산하기구, CSCE 등 동·서독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정의 경우는 통일독일이 단독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통지를 하였음.
  - 동독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통일독일이 더이상 가입할 의사가 없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의 경우는 관련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할 의무가 없어,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의 회원자격은 자동 효력상실된 것으로 봄.

- 양자간 조약·협정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와는 이미 협의(Konsultation)를 끝냈으며, 소연방의 CIS 국가와 협의가 개별적으로 진행중임.

#### 나. 동독과 제3국간 외교 및 영사관계 종식 통보

- o 10.3 동독과 동시에 외국이 동독과 맺고 있는 외교 및 영사관계가 소멸됨을 통보
- o 동독이후 잠정조치로 3개월간 동베를린 주재 외교관에게 외교특권 부여

#### 다. 동독 외교관 처리

- o 4,000여명의 구동독 외무성 직원중 외교직은 동독과 동시에 일단 전원 해임되고 주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약 250명이 임시 고용계약 형태로 잔류
  - 이들 대부분은 재외공관 관리, 문서이관, 건물유지 및 자료입력 등에 소요되는 인력으로 청산작업이 끝날때까지만 근무
  - 250명중 몇명이 앞으로 계속 정식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남게될지는 연방외무성의 실행정수요와 예산운용의 가능범위(재무성과 협의) 내에서 결정
  - 해고된 외교직 공무원중 극소수(수명)는 외무성내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 절차중에 있음.
- o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외교관 해고 기준(일반공무원 해고 기준과 동일)
  - Stasi 등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자
  - 구동독 공산당과 대중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자
  - 「시민적, 정치적 재권리에 관한 국제협약」('60.12.19)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48.12.10)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적성상의 부적합으로 업무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
  - \* 대표성, 신뢰성, 과거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등 외교업무의 특이성에 비추어 타부처보다 해고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라. 동독 외교공관 처리

- o 동독과 더불어 연방재산으로 귀속
- o 독일외무성은 재외공관에 동독공관을 인수케 하고 계속 사용가능 여부 파악을 지시
  - 현지공관이 계속 사용 필요성을 보고하고 외무성도 동의한 경우
    - 문화원 등 타기관 건물로 사용
    - 건물 개축비용 산정을 위해 연방건설성에 전문감정 의뢰
    - 건축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연방재무성에 신청하여 개축
  - 계속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외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의해 공매 처분
    - \* 원만한 공관인수 등 건설적인 청산을 위해 서독 외무성은 90.3 동독 선거직후 재외공관에 대해 동독 공관원과 인간적인 접촉을 갖고, 상호 협력하라고 지시

마. 동독 주재 외국공관 처리

- o 동독과 더불어 베를린에는 1개의 공관만 허용
  - 본 주재 대사관의 베를린 사무소 또는 영사관으로 변경

바. 통독의 대외채무 및 채권 처리

- '90.7.1(화폐·경제·사회통합 발효시)까지 서독 및 제3국에 대해 통독이 지니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통독시까지 계속 유효한 경우 연방재무장관의 지시와 감독하에 청산됨.
  - 1990년 7월 2일 현재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DM으로 환산하여 구통독의 채권액은 74억 DM, 채무액을 386억 DM 이었음.
    - 총 채권액중 40억 DM은 국가별 내역이 밝혀졌으며, 34억 DM은 구통독 대외무역회사(KOKO)가 갖고 있던 채권으로 아직 국가별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음.
    - 채무는 대외무역회사의 경우 신착청을 통해, 은행채무는 독일수출입은행(DABA)를 통해 변제되고 있으나, 은행들이 거래비밀을 이유로 국별 채무현황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
  - 통독이후 체결될 각 당사자국과의 채무 및 채권이전 협정 체결시에는 구통독의 조약·협정처리에 있어서 적용한 통합조약 12조의 기본원칙이 적용됨.
  - DM으로의 환산비율이 2:1로 책정되어 채권과 채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재무성은 차액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그 차액을 보상에 줄 방침임.
  - 해당 채권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한 재무성의 지시로 신탁청에 의해 신탁관리되거나 연방재산으로 이양됨.
- 통독이 회원국으로 있던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기구 특히 과거 COMECON에 대해서 지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통독이후 특별관리 대상이 됨.
  - 구 COMECON 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는 참가국들의 시장경제적 질서로 개혁 과정과 해당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EC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감.

## 1-4 과거청산

### 가. 구동독 정권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

- 통합조약 17조에 의하면 과거 동독 공산정권의 반법치국가적 행위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통독이후 입법권자가 적절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통합조약에 의하면 복권·보상 (Rehabilitierung)과 과거 형사처벌 무효화 판결(Kassation)의 2중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되어 있음.
  - 현재 10만으로 추정되는 과거 구체제 피해자인 동독주민들이 각각 법원에 복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연방법무성은 '91.7 관계법률안인 “구체제 불법행위 청산법”(Unrechthereinigungsgesetz)를 제출하였는데 '92.10 현재 연방 상·하원 중재위원회에 계류중임.
- 법무성이 마련한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상액 문제인데 구금자들의 구금일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구금일당 보상액 결정 문제와 관련, 정부의 재정형편이 문제가 되었음.
    - 현재 법무성안은 구금기간 1달을 기준으로 모든 피해자가 300 DM을 기본적으로 보상받되 서독으로 이주하지 않고 동독에 잔류했던 사람은 추가로 150 DM을 더 받아 450 DM을 지급하기로 했고, 또한 피해자중 노약자, 병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구속자 지원 기금”(Stiftung fuer ehemaliger Haefdlinge)에서 추가로 150 DM을 더 받아 600 DM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다만 이제까지 베를린장벽 이전에 동독을 탈출하거나 이주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피해자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액을 구금 한달 기준 300 DM을 책정해 놓고 있음.
- 현재 추진중인 법안에는 피해자 보상의 범위를 우선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자와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조치된 사람,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국경근방에 살던 사람중 강제이주조치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는사람에 한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그러나 체제에 저항하다가 받은 많은 직업상 차별(강등, 해고, 직업교육 방해, 승진기회 박탈),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이러한 피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금과 같은 정도의 피해라고 많은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구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생계보조 형식의 지원을 규정한 구속자 지원법(Haeflingshilfegesetz)을 보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보상피해의 범위를 넓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나치만행에 대해 피해보상을 규정한 연방피해보상법(Bundesentschaedigungsgesetz)에 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인 SPD와 피해자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음.
    - \* 연방피해보상법에 의하면 “정치적, 종교적, 세계관적, 인종적인 차별로 육체와 건강, 자유,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직업적, 경제적 성장의 가능성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직업상 차별 및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은 법무성 내에 전담과를 설치하여 작업을 추진중인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재정형편을 고려, 그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이제까지의 구속자 지원법에는 과거 동독의 체제에 “폭력을 사용하여”(gewaltsam) 저항한 경우(특히 '58.6.17 민중봉기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법무성 보상법안은 이를 전부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또한 소련점령 통치하에서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이번 피해자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러한 입법조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하여도 너무 늦게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보상의 혜택을 많이 못받을 것으로 피해자 대표들은 안타카와 하고 있음.
- 실제 피해자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치적인 구금자들의 70% 정도가 나이가 이미 65세 이상으로 연로하며, 또 많은 구금에 따른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함.
  - 반면, 구동독지역 신설주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복권·보상 신청서류가 쌓여 있어 이를 심사 확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 예를 들어 '92년 7월말 현재 베를린 주법원의 경우 6,776건의 신청서가 접수(이중 5,914건은 복권, 862건은 판결무효화 신청임)되어, 이중 1,677건 처리됨.
- 많은 피해대표들은 또한 물질적 보상에 앞서 우선 자신이 죄가 없었고 단지 정치적 동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명예회복에 관한 선언이 연방하원과 같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함.

## 나.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가해자들 처벌 관련

- 구체제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폭행사태에 대해서는 신설주들의 사법체계가 확립되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할 방침임.
- 기존 서베를린 검찰이 주축이 되어 동베를린 검찰을 흡수, 가장 빨리 사법체계를 확립한 베를린 검찰은 “정권적 범죄행위”(Regierungskriminalitaet)를 전담하는 임시조직을 편성하여 과거 체제수호를 위해 법치국가적 질서에 어긋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치국원, 국가안보위원회, 국경수비문제를 담당했던 국방성, Stasi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 호네커가 지난 3월 소련으로 탈출한 이후 베를린주 검찰은 밀케 전 국가보위부(Stasi) 부장 등 5명의 구동독 당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 베를린 장벽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공동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음.
  - 이들 5명은 '74.5.3 당시 Honecker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안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동 회의에 참가하여 베를린장벽을 사수하기 위해 국경탈출자에 대해서 사격명령(Schiessbefehl)을 구체화한 결정에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는 고르바초프 실각후 91년 12월 러시아정부가 모스크바를 떠날 것을 요구하자, 모스크바 주재 칠레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92.7.29 독일로 강제 송환되어, 베를린 Moabit 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 대기중임.
  - 독일정부는 공동살인 및 살인교사죄('61년 베를린장벽 구축이후 49건 총 200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를 적용, 정치적인 재판이 아닌,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재판”에 회부, 그가 직접적인 살인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를 가릴 예정임.

- 이들 구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은 피고인들이 74년 회의에서 사격명령을 구체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관들이 국경탈출 사망자들의 소송사건과 국가안보위원회의 인과관계 입증해야 하며, 국경상에서의 사살행위가 그당시로 볼때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는가 라는 점을 연방대법원이 판정해줘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음.
- 한편, 베를린 지방법원은 92.1.20 베를린장벽 탈출자를 사살한 4명의 구동독 국경수비대원에 대해 유죄판결(2명은 무죄)을 내림.
  - 판결이유에서 국가의 법률이 공공연히 불법적 성격을 띠고 있을때 이에 대한 복종은 유죄라고 밝힘.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생명에 관한 인간의 권리는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자연법적인 정의가 실체법적인 안정성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테러조직인 적군파 (RAF)에 대한 방조·지원 혐의로 전 Stasi 부장과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음.
- 현재 5,000명으로 추정되는 과거 동독 스파이들의 처벌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형식적으로는 같은 스파이활동 이었지만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거 서독의 정체성(Identitaet)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독의 스파이들은 서독정부의 비호하에 이러한 활동을 한 반면, 동독의 스파이들은 당시 서독에 대해 서독의 내적·외적인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위해행위를 저질렀으므로 “ 공격적인” (offensiv) 동독스파이 활동과, “ 방어적인” (defensiv) 서독 스파이 (BND)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처벌을 반대하는측은 스파이활동은 쌍방국가간 활동으로 오래전부터 통용되던 관행이었으며, '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부터는 동독의 국가성이 광범위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통독이란 특수한 상황이지만 과거 서독의 법을 적용, 이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기본법 3조의 평등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
  - 한편, 92.9.24 연방검찰청은 33년간 Stasi 대외정찰국장을 맡은바 있는 마르쿠스 볼프를 12명의 대서독 스파이를 통한 간첩활동 등 국가모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함.
- 현재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문제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행 법률 구조하에서는 과거 청산문제가 총체적인 정치재판을 통한 역사적인 매듭은 불가능하고, 각 개별적인 과거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
- 과거 동독의 체제가 다른 가치 및 법률체계에 근거하고 있었고 서독의 법치 국가적 질서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불법”(Un-Rechts)을 규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 또한 형법은 현 법적질서에 대한 반사회적인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저질러진 집단적인 범죄의 경우 개별화(individualisieren)하여야만 범죄구성 요건(Strafbestand)이 성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2. 군사분야 통합

### 가. 군대조직 및 장비 인수·개편

- '90.10.3 통독과 더불어 연방국방성은 구동독 인민군의 지휘권과 병력, 장비, 인사 등 군사통합을 위한 과도기 임무수행을 위해 독일연방군 동부사령부(Das Bundeswehrkommando Ost)를 설치하여 '91.6.30까지 9개월동안 통독에 따른 군사통합 문제를 관장케 하였으며, '91.7.1부로 동부사령부는 해체되고, 육군 동부사령부는 육군지휘참모본부 예하로, 해군사령부는 해군함대사령부 예하로, 공군사령부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로 예속 전환
-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인원선발과 감축(해고)에 따른 문제임.
  - 통독에 따른 국제적인 제조약에 따라 독일연방군은 65만(구동독인민군 포함)에서 1994년말까지 37만으로 감축하기로 되어 있음.
    - 감축은 퇴직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퇴직후의 사회적 적응, 새로운 직업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연방고용청과의 협조로 전역군인에게 민간직 직능 부여 및 직업훈련 교육 실시
  - 구동독 인민군중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인력 심사·선발 문제는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2년동안의 시보기간(Probezeit)을 설정, 일단 선별된 자들을 시한부 군인(Soldat auf Zeit)으로 근무케 한뒤, 최종적으로 정식 군인으로 채용할 계획임.
    - '90.10.3 구동독 인민군 총 9만명(단기지원병 및 직업군인 51,000명, 의무병 39,000명)을 인수, 1994년말까지 50,000명으로 감축 예정
- 독일연방군 2,500여명을 동독지역에 파견, 구동독 인민군 부대에 지휘관 및 참모로 배치

- 과거 175,000명에 달했던 동독인민군 및 중무장했던 400,000명의 민병대와 450,000명의 민방위대, 국경수비대, 체육·기술협회, Stasi, 경찰 등이 사용하던 모든 물자를 인수, 독일연방 국방성 동부지역 파견출장소가 관리·처리를 담당

- 인수장비 현황

육	군	해	군	공	군
전 차	: 3,250대	전 투 합	: 19척	전 투 기	: 275대
장 갑 차	: 6,400대	경 비 정	: 38척	(MIG-29기	: 24대)
포병화기	: 2,500문	기 퇴 정	: 42척	헬 기	: 140대
SA계열 미사일	: 300기	지 원 합	: 15척	수 송 기	: 32대
중단거리 미사일	: 60기	헬 기	: 12대	미 사 일	: 205기
총 기 류	: 약 170만정	기 타 선박		기 타 훈련기	

- CFE 협정에 의거 전차, 전투기, 대포, 함정, 미사일 등 5대 무기체계에 대한 NATO 16개국의 무기감축협정에 따라, MIG-29기(성능검사에서 우수 비행기로 평가되었고, 상당한 부속품 재고량이 있어서 10~15년 사용 예정)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비를 폐기 또는 판매 계획
- 구동독 인민군 보유 탄약 약 30만톤 인수, 해체실험과 함께 대다수를 폐기할 계획이며, 구매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 항공기와 선박을 운행
  - 탄약폐기에 10~15년 소요, 막대한 비용 소모

○ 구동독 주둔 소련군은 '94말까지 점진적으로 철수

- 통독당시 소련인은 군인 34만명과 민간인 21만 등 총 55만명 이었으며,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병영·훈련장 등의 부동산 가치는 1,000억 DM으로 추정

- '94까지 매년 4~5개 사단이 철수할 계획이며 약 4,000기에 달하는 각종 무기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
- 잔류 소련군의 탈영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소련군대의 기강 해이와 독일의 경제·사회적 매력 때문에 귀향을 거부하고 현재도 250명의 소련군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있음.
- o 통독과 더불어 동독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기밀 서류 2만 6천건이 독일연방군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다수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사활동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음.

#### 나. 제기된 문제점

- o 과거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던 분단상태의 의식을 극복하고 “하나의 군대”로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
  - 구동독 인민군중 50세 이상과 대령이상의 현역들은 모두 전역시켰기 때문에 구체제와 관련된 주요 권력기반은 제거되었다고 볼수 있음.
  - 근무환경(특히 내무반, 위생시설, 취사장 등 군시설), 보수, 의료혜택, 전·퇴역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
  - 군인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서독수준의 70%에 해당하는 봉급(점차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격차를 줄어갈 계획이지만)을 받고 있는 바,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병에 대해서는 점차 격차를 해소할 방침임.
  - 잔류 구동독 인민군들중 5천명의 장교와 3천명의 하사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제하의 민주군대에 적응하도록 2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케 하였음.

### 3. 경제분야 통합

#### 3-1 구동독의 경제재건

##### 가. 구동독의 전체경제 현황

- 구동독지역 전체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볼때 1991년 중반에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말과 대비하여 보면 아직도 전체경제 규모는 그 절반수준임 (아래 도표 참조).

구동독지역 각 산업별 총 부가가치 생산 · GDP(1990~1992)

(단위 : 십억 DM)

	1990				1991				199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 농림수산업	1.0	1.0	1.4	1.1	0.7	0.7	1.1	0.8	0.5	0.5
○ 공업전체	34.9	34.7	24.4	22.5	17.3	16.3	16.8	17.1	16.6	16.4
- 에너지 · 광업	2.9	2.6	2.4	2.7	2.7	2.0	1.9	2.1	2.0	1.6
- 제조업	27.2	26.0	16.6	15.1	11.1	10.4	10.4	10.6	9.9	9.5
- 건설업	4.8	6.0	5.3	4.7	3.5	4.0	4.5	4.5	4.7	5.2
○ 무역 및 교통	16.8	16.3	9.9	10.0	8.3	8.1	8.0	8.7	8.0	8.3
○ 서비스업	12.4	12.1	12.6	12.1	11.6	11.4	11.8	12.2	12.6	12.9
○ 국가 · 가계활동	14.4	14.3	14.1	12.6	11.8	11.1	11.6	12.2	11.9	12.1
○ 전체경제 총 부가가치 생산	79.5	78.4	62.2	58.2	49.8	47.7	49.4	51.0	49.5	49.4
○ GDP (국내총생산)	80.4	79.6	60.2	56.8	46.4	44.0	45.5	47.1	46.0	46.0

※ 1991년 가격 기준임

※ 총 부가가치 생산에 판매세와 관세를 합해서 GDP가 됨.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

- 농림수산업은 1990년 1/4분기에 비해 1992년 2/4분기 전체 생산량이 1/2 수준
  - 제조업 분야에서는 1990년 1/4분기에 비해 1992년 2/4분기 전체 생산량이 1/3 수준
    - 전반적으로 서독지역 제품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동독지역 지방시장에 유통되는 식료품·기호품 생산 및 건축경기에 힘입은 건축자재산업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
  -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1992년 2/4분기 현재, 1990년 1/4분기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경제구조에로의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o 45년에 걸친 사회주의계획경제 실패의 유산으로 인해 과거 동독의 생산성 없는 경제구조가 현대화되고, 노후한 생산시설이 정비되는데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과거 COMECON 국가들의 경기회복 부진으로 구동독 제품 시장 상실
    - 과거 동독기업의 대외무역중 70% 차지(그중 40%는 대소 무역)
  - 여전히 기업투자 장애요소 존재
    - 생산수단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인 소유관계 미확정
    - 각종 인·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해줄 행정체계 미구축
    - 사회간접자본시설 미확충
- o 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노조측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능가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음.

구동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및 생산성(1990~1992)

(단위 : DM/시간당)

	1990		1991		1992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임 금 ①	10.86	12.22	16.04	22.72	21.11
생산성 ②	19.16	18.66	17.81	20.39	19.18

① 노동자 1인 기준 시간당 임금(전체임금을 총 노동자수로 나눈 액수)

② 국내총생산(GDP)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액수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

나. 통독이후 동·서독 경제규모 비교('91년말 현재)

구 분 ( 단 위 )	주 요 지 표			구동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독일전체	구서독지역 대 비	독일전체 대 비
1. 인 구 (백만)	62	16.5	78.5	26.6	21
2. 면 적 (천km <sup>2</sup> )	249	108	357	43.3	30.2
3. G N P (10억DM)	2,615.2	193.1	2,080.3	7.4	6.9
4. 국내총수요(10억DM)	2,427.3	361.2	2,788.5	14.9	13
5. G D P (10억DM)	2,597.7	183	2,780.7	7.0	6.6
6. 총취업인구(백만)	29.17	7.16	36.33	24.6	19.7
7. 생산성(DM) : GDP/총취업인구	89,046	25,537	76,521	28.7	-
8. 소비자 물가 상승률 (%)	3.5	13.6	-	-	-
9. 실업률 (%)	6.0	14.4	6.7	-	-
10. 실업자수 (천명)	1,821	1,116	2,937	-	-
11. 임금인상률 (%)	7.0	40	6.9	-	-
12. 시간당 임금비용 (DM)	44.7	72.3	46.55	+ 61.6%	-
13.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697	1,647	3,280	44.5	-
14. 임금-생산성 격차 서독을 100으로 할때	100	155.3	103.2	+ 55.3%	-

\* 9, 10은 92년 8월말 현재

출처 : 연방경제성 발행 "신설연방주 상황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

다. 산업별 경제구조 재편 및 재건

0 농업분야

- 농업인구

- 구등록의 토지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력은 구서독의 2배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의 정착을 위해 과다한 은폐실업자의 감축이 불가피
- 1990년 1/4분기의 96만명에서 1992년 2/4분기말 현재 총 취업인구는 29만명으로 줄어듦.

\* 나머지는 타직종으로 전환했거나, 조기은퇴했거나, 직업전환 훈련중이거나, 실업상태임.

-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의 구조개편

- 1991.7.7 농업구조 조정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을 통과, 생산수단의 소유권 확정 및 농업생산협동조합 구조개편 추진
- 농업협동조합은 1991년말까지 해산되어 협동조합, 가족농 형태의 개인 자영농, 회사농(유한회사, 합자회사) 형태로 다시 등록됨.

※ 구동독지역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개편현황(1992년 2월 현재)

형 태	개 수	총 농경지중 경작 비율 (%)	평균 영농규모 (ha)
0 개별농	17,072	24.8	74.2
- 가족농 형태 자영농	12,647	17.1	69.2
· 그중 전업농	5,565	14.6	134.6
- 협업농	933	7.3	397.7
- 원예농	2,462	0.1	2.1
- 기타	1,030	0.3	16.2
0 법인체	3,039	75.2	1,266.4
- 새로 등록된 협동조합	1,475	43.9	1,521.7
- 유한책임회사 형태 기업농	1,120	20.7	945.4
- 다른 법인 형태	157	2.3	764.8
- 합자회사 형태 기업농	287	8.3	1,481.2
전 체	20,111	100	254.4

- 과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 생산성이 저조하며, 환경오염 잔재가 심각하여  
인수자를 찾지 못한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정리됨.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재편상 가장 큰 장애요인은 농지소유권 관계의 미해결  
문제이며, 자영농가 정착을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현대적인 영농기법, 시장  
경제에 대한 경험 등이 요구되고 있음.
- 농지 및 산지 사유화
- 사유화 대상 면적(농지 약 195만 ha, 산지 약 190만 ha)중 14,917 ha  
사유화(1992.6월말 현재)
  - 성급한 토지의 매각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아직까지  
소유관계가 명확치 않아 임대차에 중점을 둠.
  - 소유권이 불명확한 국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소유자나, 협동조합원  
등에 임대
  - 과거 농업생산협동조합 농지는 필지의 불명확성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합원  
또는 재설립자에게 임대
- 농업지원 대책
- '92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 139억 DM중 26억 DM을 구동독지역을 위해 사용
  - 가족농 재건을 위한 출발 지원 용자,  
과거 부채(1990.7.1 이전 발생)의 경감,  
농업 경영 지원,  
농지 기반 재정비 지원,  
가공 및 유통구조 현대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 0 상공업분야

- 국유기업의 사유화 지속 추진
  - 신탁청 관리 11,926개 기업중 8,175개를 매각했으며, 8,048건의 부동산을 매각(1992.6월말 현재)
  - 사유화를 통해 307억의 매각 수익을 올렸으며, 1,440억 DM의 장래투자가 보장되고, 122만명의 근로자의 취업이 보장됨.
  - 신탁청은 1993년말까지 사유화 작업을 일단 마무리 지을 방침인데, 그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고 남게될 부실기업은 별도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Manegement KG에서 기업정비(sanieren)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유화 한다는 방침임.
  
-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 구동독지역 투자에 한하여 기한부 투자보조금, 특별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개인투자 유치
  - '91에 225억 DM, '92에는 435억 DM 사기업 분야 투자 예상 (Ifo 연구소 추정)
  -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입법 제정·정비 :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 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1991.3) 제정 및 “제2차 재산법” 개정(1992.7)을 통해 미해결 재산의 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반환원칙에 광범위한 예외 인정
  
-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촉진
  - 교통, 우편·통신, 도시건설, 환경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현대화
  - 교통분야 300억 DM('92~'95), 우편·통신 분야 550억 DM('91~'97) 투자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해 건설에 따른 기존의 행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마련중.

- 기업 신설 현황

- 서방기업의 진출 주요 동기 : 양질의 노동력 확보 용이, 구동독 시장이 제공하는 막대한 구매력, 연방정부의 각종 투자지원 혜택, 동구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 기업경영상 주요 애로사항 : 임금상승, 투자재원 확보 미비, 생산시설 노후화, 지방행정체계 미비
- 구동독지역 기업 신설

(단위 : 천건)

	'90	'91	'92.1~2	총 계
신규허가신청	281	268	35	585
폐업 신고	26	92	19	138
순증가	254	176	16	446

### 3-2 봉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 가. 구동독지역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취약

##### o 세입 격감의 원인

- 구동독지역 기업의 도산으로 법인세 부문 세수부진
- 구서독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개인소득세 세수부진
- 국유재산의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부문 세수부진
- 세무행정체계의 미확립으로 세원포착 미흡

##### o 조세수입 현황 (DIW 연구소 추정)

- '91년 구동독지역 각주는 구서독지역의 1/3, 지방자치단체는 1/10 수준
- '95년까지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나, 1/2 수준 유지 추정
- 주민 1인당 조세수입현황

(단위 : DM)

	'91	'92	'95
구서독 지역주	3,300	3,500	4,300
구동독 지역주	1,150	1,300	2,100
구서독 지자체	1,300	1,400	1,650
구동독 지자체	150	300	800

나. 동독지역 재건에 필요한 재정지출수요 증가

서기 2,000년까지 통일비용 내역

(단위 : D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청 관리기업으로 인한 부담액</li> <li>- 동독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된 채권·채무 차액 보전</li> <li>- 구동독 체제 희생자·복권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처벌자 보상 : 7억, 미반환 재산 보상 : 150억</li> </ul> </li> <li>- 소련군 철수비용</li> </ul> </li> <li>○ 동독재건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 비용 (과거 서독지역의 붓사는 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화시설 투자</li> <li>- 교통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480억, 도로 700억, 하운 80억, 공항 10억</li> </ul> </li> <li>- 에너지산업 설비 현대화</li> <li>- 교육환경 격차 해소</li> <li>- 우편·통신분야 시설 투자</li> <li>- 주택분야 보수·유지, 현대화</li> <li>- 의료시설 확충</li> <li>-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지원금</li> <li>* 구동독지역의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적자분은 각 기금에서 각출금 요율 조정으로 지원</li> </ul> </li> <li>○ 구동독지역 노동자(750만 기준) 노동생산성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 현대화 또는 신규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년말 현재 구동독지역 생산성은 서독지역의 28.7%</li> </ul> </li> </ul>	<p>약 3,700억</p> <p>2,500억</p> <p>1,000억</p> <p>157억</p> <p>130억</p> <p>약 6,400억</p> <p>2,000억</p> <p>1,270억</p> <p>1,000억</p> <p>700억</p> <p>550억</p> <p>500억</p> <p>300억</p> <p>70억</p> <p>약 1조</p>
총 계	약 2조

\* 대사관 추정치 (각종자료 참고 자체 작성)

o 상기 추정예 의하면 매년 2,000억 DM 이상 소요

- 이 중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공공부분의 이전 지출액  
(연방경제성 제공)

(단위 : 10억 DM)

	'91년	'92년
1. 연방예산		
1.1 총 이전 지출(1)	86	105
1.2 구동독지역에서 세입	23	29
1.3 분단 관련 세출 삭감	4	5
1.4 순 이전 지출 (1.1-1.2-1.3)	59	71
2. 구서독지역 주/자치단체 예산	7.5	9
3. "독일통일기금"용 차입(2)	31	24
4. 유럽부흥계획(ERP)에 의한 지원	9.7	10
5. 채무 청산 기금	2.5	16.5
6. 공공기관 이전 지출액 (1.4+2+3+4+5)	106	125
7. 사회보험기관 (실업·의료·연금) 이전 지출액	22	50
8. 공공부문 이전 지출 총액 (6+7)	<u>128</u>	<u>175</u>
* 2년동안 매년 평균 1,500억 DM 투입		

주 : (1) 각 부처 봉독관련 부문 세출예산 총액과 총 이전 지출액이 다른 이유는 각 부처 예산에는 대동독 직접 이전액 이외에 구서독지역을 포함한 국가전체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2) 동 보고서 '다' 에서 제시한 "독일통일기금" 연도별 지원액과 다른 이유는 "독일통일기금" 중 일부는 연방예산에서 지불하기 때문임.

- 나머지는 사기업 분야의 투자에 의존

- '91년 255억 DM, '92년에는 435억 DM 투자 예정

다. 통독비용 확보를 위한 각종 재원조달 수단

o “ 독일통일기금 ” 에 의한 지원 : '94년에는 완전 소진

- 연도별 지원액

(단위 : 십억 DM)

년 도	'90 하반기	'91	'92	'93	'94	총액
당초 조성액	22	35	28	20	10	115
증액된 지원액	22	35	33.9	25.9	15.9	146.3

-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주·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o “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 ”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마련(91.3.8)

-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계, 노조 공동대응

- 연방예산에서 '91~'92 동안 총 240억 DM 지출, 교통·실업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o 세금인상조치를 통한 재원 마련

- 인상내용

·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한 7.5% 추과과세 : 220억 DM

( '91.7부터 1년간 “ 연대 기여금 ” 이란 명목으로 한시적 인상 )

· 석유세, 담배세, 보험세 : 매년 160억 DM 추정

- 국민의 추가부담액

(단위 : DM)

매월소득	추 가 부 담 액	
	독신자 가정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
1,400	32.80	25.50
2,000	41.10	25.60
3,500	84.40	58.50
5,000	118.50	82.80
6,500	158.80	111.60
8,000	223.20	160.60
10,000	294.80	206.50

- 주민개인소득에 대한 담세율 변화 추이

(단위 : %)

년 도	'70	'75	'80	'85	'90	'91	'95
담세율	33.9	36.6	39.3	42.0	41.5	43.0	45.2

o 적자재정 운용

- 지속적 적자재정 운용은 공공부문의 자본시장 차입을 증가시키고, 결국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부자저해로 동독지역의 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방만한 팽창예산 운용은 경화로서 마르크화의 신뢰문제와도 관련되어 상당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부문 적자 누계액(연방정부, 주정부, 신탁청, 각 특별회계, 연방철도, 연방우편 적자 포함)

(단위 : 10억 DM)

년 도	'85	'86	'87	'88	'89	'90	'91	'92
누계액	847	894	951	1,000	1,039	1,171	1,300	1,600

0 각종 특별부과금 도입 검토

- 동독지역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수당 기여금 증액 : 매년 240억 DM
- 환경정화시설 개수를 목적으로한 환경특별부과금 도입 검토

0 통독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계층으로부터 일정액의 연대 기여금을 징수하여 부담을 조정(Lastenausgleich)하는 방안 논의중

- 이전 몰수재산을 반환받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 이전 몰수재산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징수
- 부동산, 주식, 저축, 보험 등의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는 잘사는 사람에 대해 일정 부담액 징수

\* 전후 서독에서는 1952년 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을 입법화하여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 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소련점령지역으로부터 재산을 잃고 쫓겨난 실향민이 서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음(부담조정 기금에서 '89년말까지 총 1,390억 DM 지불).



### 3-3 소유 · 재산권 문제

#### 가. 공권력에 의해 몰수된 이전재산권의 반환 및 보상

- o '45-'48(소련점령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재산은 미반환
  - 약 320만 ha로서 구동독지역 토지의 1/3에 해당
  - “ 2+4” 회담에서 소련측에 양해사항으로 통합조약에서 동·서독이 미반환에 합의
  - 이전 소유권자들은 상기 통합조약의 규정들이 기본법(헌법) 제3조(평등권), 제14조(재산권), 제79조(기본법 개정불가 사유)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합헌 판결을 내림.
    - 통합조약 4조 Nr. 5에 의해 기본법 143조 3항에 삽입된 상기 몰수 재산의 미반환 방침은, 79조 기본법 개정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 당시 서독의 국가권력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적으로 동독지역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마치 외국의 국가권력작용에 의한 제반조치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을 질수 없듯이 당시 소련점령군이 행한 몰수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수 없으므로” 기본법 제14조(재산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다만 기본법 제3조(평등권)에 의거 입법권자는 사후 보상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판시함.
- o '49.10.7 이후에 반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몰수된 재산권은 재산법(Vermögensgesetz)에 의하여 이전 소유자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함.
  - 담당부서인 연방 미해결 재산 관리청(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산하 6개주 관리청과, 216개 지방사무소에서 이를 심사·처리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간과 행정인력이 소요됨.

- 각 주별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1992년 6월말 현재)

(단위 : 천)

주 별	신 청 자 수	해당재산건수	처 리 건 수	처리율 (%)
베를린	113	153	7.5	4.9
브란덴부르크	243	471	30.9	6.5
메클렌부르크 포어퍼머른	123	261	21.2	8.1
작센	231	332	43.1	12.9
작센-안할트	142	443	44.2	9.9
튀링겐	199	551	39.7	7.3
총 계	1,051	2,211	186.6	8.4

· 총 105만명이 220만건의 재산에 대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이중 18만건이 처리되어 통독2년이 지난현재 처리율은 8.4%임.

○ 다만 통독이후 2회(1991년 3월, 1992년 7월)에 걸친 법률 개정에 의하여 재산법 제3조는 공공단체(예를 들어 지방행정기관)나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일 경우 “반환원칙”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구동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여 반환되지 않고 신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임대되거나 매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지나 건물의 경우

-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때
-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에 필요할때

- 기업의 경우

- 고용을 창출,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재고시킬 때
-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원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개인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로 간주되는 특별예외규정은 2차 법개정(1992.7)에 의해 '95.12 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됨.

- 공공단체나 신탁청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도 투자법 (Investitionsgesetz)에 의해 반환신청에도 불구하고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Investitionsbescheinigung)를 시·군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바, 발급조건은 상기 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재사유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소유권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소유권리불 지정 (Einweisung) 받아 기업을 자기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임시적인 권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자가 재산법을 담당하는 해당 주정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신청권자가 기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며,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신청권자는 기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업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원소유자 (Alteigentümer)와 현재의 관리자 (Verfügensberechtigten, 보통 신탁청)의 법률적 관계는 관리자가 매매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대계약 (Pachtvertrag)의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이때 임대료나 매매대금 지불은 완전히 소유관계의 확정으로 관리자에게 기업의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 (gestundet) 됨.
  - 해당관청에 의한 이러한 임시적 권리 지정이외에도 원소유자와 해당관리자는 언제든지 기업의 잠정적인 이용에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해당 관청에 통보되어야 함.

## 나. 보상의 원칙과 보상기금(Entschädigungsfond) 재원 마련

- 연방재무성은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입법(Entschädigungsgesetz)을 추진중인 바, 1992년 7월 1일 그 보상의 원칙과 보상기금 재원마련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힘.
- 보상의 원칙
  -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몰수된 재산은 보상함.
  - 1949년 이후 몰수재산중 반환대상 재산이 여러번 몰수조치를 당한 경우, 첫번째 경우에만 반환권이 주어지고, 그 이후의 경우에는 보상이 행해짐.
  - 반환이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반환을 포기한 경우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음 (반환과 보상중의 어느것을 선택할 수는 없음).
  - 개인 부동산과 농지·산지의 경우, 보상액은 1935년 기준 시가(분단 이전 토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지가)에 1.3배를 함.
  - 영업용 재산의 경우 보상액은 1.3배 없이 1935년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고 25만 DM을 넘을 수 없음.
  - 금융재산의 경우, 화폐통합 당시의 교환율에 의거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액수의 50%를 보상함.
  - 지적보호재산의 경우는, 구동독 당시 가격의 50%를 보상하되, 2만 DM을 넘을 수 없음.
  - 특히 고액보상의 경우, 일정액 이상은 누진적으로 보상액을 감하는데, 백만 DM이 넘으면 40%, 2백만 DM이 넘으면 70%를 감함.
  - 전후 서독으로 이주하여 서독정부로부터 부담조정금(Lastenausgleich)을 받은 경우는, 재산 반환시에는 다시 회수하며, 보상시는 정산조치함.
- 보상기금 재원 마련
  - 보상기금의 재원은 신탁청 기업·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 재정재산 매각 대금 일부, 부담조정금 회수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점유권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구입대금의 일부, 재산특별부과금(Vermögensabgabe) 등으로 마련할 예정임.

- 재산특별부과금은 재산을 반환받는 사람들로부터 해당재산가격의 1/3을 부과할 방침임.
    - 해당 재산가격은 1935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산지의 경우는 당시 가격의 4배, 임대주택은 6배, 택지가 50% 이상인 대지는 8배, 상업용 부동산 및 연립주택은 10배, 건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는 27배를 곱해서 산정
  - 그러나 재산 특별부과금 징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면제해줌.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독에 거주한 경우나, 기업을 반환받아 최소한 3년동안 90% 이상의 고용을 보장한 경우 : 100%
    - 198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1월 9일 사이에 동독을 떠나 서방으로 이주한 사람 : 66.6%
    - 기업을 반환받아 최소한 3년동안 50% 이상의 고용을 보장한 경우 : 50%
    - 농지와 산지를 반환받아 최소한 3년이상 경작한 경우 : 50%
    - 1961년 8월 베를린장벽 설치이후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동독에 살다가 서방으로 이주한 경우 : 33.3%
  - 재산 특별부과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징수되며, 해당권리자가 그때까지 재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이후 5년동안 징수가 유예될 수 있음.
- o 보상은 상기 재원들에 의해 보상기금이 조성되고 난후 199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다. 원소유자의 권리신청이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 o 구동독의 지방행정기관 관리하의 국유재산은 통합조약 21조와 22조에 따라 행정재산(Verwaltungsvermoegen)과 재정재산(Finanzvermoegen)으로 분류되는데, 신탁법(Treuhandgesetz)과 지방재산법(Kommunalevermoegensgesetz)의 규정에 따라 신설 5개주 지방행정기관의 신청으로 신탁청이나 주 국세청(Oberfinanzdirektion)의 결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

## 나. 보상의 원칙과 보상기금(Entschädigungsfond) 재원 마련

- 연방재무성은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입법(Entschädigungsgesetz)을 추진중인 바, 1992년 7월 1일 그 보상의 원칙과 보상기금 재원마련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힘.
- 보상의 원칙
  -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몰수된 재산은 보상함.
  - 1949년 이후 몰수재산중 반환대상 재산이 여러번 몰수조치를 당한 경우, 첫번째 경우에만 반환권이 주어지고, 그 이후의 경우에는 보상이 행해짐.
  - 반환이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반환을 포기한 경우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음 (반환과 보상중의 어느것을 선택할 수는 없음).
  - 개인 부동산과 농지·산지의 경우, 보상액은 1935년 기준 시가(분단 이전 토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지가)에 1.3배를 함.
  - 영업용 재산의 경우 보상액은 1.3배 없이 1935년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고 25만 DM을 넘을 수 없음.
  - 금융재산의 경우, 화폐통합 당시의 교환율에 의거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액수의 50%를 보상함.
  - 지적보호재산의 경우는, 구동독 당시 가격의 50%를 보상하되, 2만 DM을 넘을 수 없음.
  - 특히 고액보상의 경우, 일정액 이상은 누진적으로 보상액을 감하는데, 백만 DM이 넘으면 40%, 2백만 DM이 넘으면 70%를 감함.
  - 전후 서독으로 이주하여 서독정부로부터 부담조정금(Lastenausgleich)을 받은 경우는, 재산 반환시에는 다시 회수하며, 보상시는 정산조치함.
- 보상기금 재원 마련
  - 보상기금의 재원은 신탁청 기업·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 재정재산 매각 대금 일부, 부담조정금 회수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점유권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구입대금의 일부, 재산특별부과금(Vermögensabgabe) 등으로 마련할 예정임.

- 재산특별부과금은 재산을 반환받는 사람으로부터 해당재산가격의 1/3을 부과할 방침임.
  - 해당 재산가격은 1935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산지의 경우는 당시 가격의 4배, 임대주택은 6배, 택지가 50% 이상인 대지는 8배, 상업용 부동산 및 연립주택은 10배, 건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는 27배를 곱해서 산정
- 그러나 재산 특별부과금 징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면제해줌.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동독에 거주한 경우나, 기업을 반환받아 최소한 3년동안 90% 이상의 고용을 보장한 경우 : 100%
  - 198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1월 9일 사이에 동독을 떠나 서방으로 이주한 사람 : 66.6%
  - 기업을 반환받아 최소한 3년동안 50% 이상의 고용을 보장한 경우 : 50%
  - 농지와 산지를 반환받아 최소한 3년이상 경작한 경우 : 50%
  - 1961년 8월 베를린장벽 설치이후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동독에 살다가 서방으로 이주한 경우 : 33.3%
- 재산 특별부과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징수되며, 해당권리자가 그때까지 재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이후 5년동안 징수가 유예될 수 있음.

○ 보상은 상기 재원들에 의해 보상기금이 조성되고 난후 199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 다. 원소유자의 권리신청이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 구동독의 지방행정기관 관리하의 국유재산은 통합조약 21조와 22조에 따라 행정재산(Verwaltungsvermoegen)과 재정재산(Finanzvermoegen)으로 분류되는데, 신탁법(Treuhandgesetz)과 지방재산법(Kommunalevermoegensgesetz)의 규정에 따라 신설 5개주 지방행정기관의 신청으로 신탁청이나 주 국세청(Oberfinanzdirektion)의 결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

- 통합조약 21조에 규정된대로 '89.10.1부터 '90.10.3(통독) 까지 직접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사용되었던 행정재산(Verwaltungsvermoegen)
  - 신탁청이 이관결정을 하는 재산 :
    - 시내교통운수회사, 청소회사, 쓰레기수거 및 운반회사, 이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 도제들의 기숙사, 공장소속 유치원, 공장소속 스포츠센터, 공장소속 종합병원, 공장소속 문화센터
  - 주 국세청이 이관결정을 하는 재산 :
    - 학교(고등), 전문대, 유치원(유아원), 스포츠센터, 시립수영장,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동묘지, 시립공원, 시립도서관, 시립극장, 박물관, 유적지, 시청, 행정기관 건물, 시립 망명자 숙소, 소방서, 쓰레기처리장, 기초 정기진단을 위한 병원, 종합병원, 양노원, 재활원, 장애인 복지원, 문화회관, 청소년클럽, 재향군인회클럽, 관개시설, 시립근교 휴양지
- 신탁청 제1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재정재산 (Finanzvermoegen) :
  - 신탁청이 이관 결정
    - 상·하수도 사업소, 난방공급회사, 도축장, 항구 및 항만 시설, 전기회사, 가스회사
- 통합조약 22조 4항에 의한 주택조합 재정재산 : 주국세청이 이관 결정
  - 주택건물, 쓰레기 처리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녹지, 난방용 기구 및 건물, 관리사무소, 관리인 주거지
- 통합조약 부속문서 II, Kap II, Sachge A, Abschim III d에 의한 구동독 정당 및 대중외곽단체 재산 : 신탁청이 이관 결정
  - 휴양시설, 주택건물, 관리사무소, 관리인 주거지, 인쇄소, 교육시설, 여가선용 시설
- Stasi가 소유하고 있던 행정 또는 재정재산 : 주 국세청이 이관 결정
- 인민공유(국유) 등산, 산림회사 : 신탁청이 이관 결정



### 3-4 과학연구 및 기술분야 재편

- 연방연구기술부(BMFT)는 통일조약 제38조에 근거한 전체독일의 연구개발 체계를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이미 기존 연방지역에 도달된 수준과 구동독 지역의 가치있는 분야를 유지하며, 지난 40년간 구동독지역의 중앙집권적이며 자유롭지 못한 명령체계 하에서 그르쳐진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전체독일의 과학연구 및 기술을 위한 공동체 구조의 창출을 지향하고 있음.
- 통일조약 제38조는 학술원(Wissenschaftsrat)이 91.12.31일까지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시키되, 각 기관들의 존립여부와 종사자의 고용관계는 '91.12.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전체독일의 연구체계를 신속히 실행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자금으로 촉진되는 연구에 있어 잘못 관리되고 실행력 없는 연구역량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기관전체가 폐쇄될 수도 있으며, 기관의 일부 또는 각개 전문그룹에 적용될 수 있음).
-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소속 연구기관들(73개소 : 종사자 24,000명)에 대한 평가는 학술원(Wissenschaftsrat)의 9개 전문분야별 평가팀(총 150명으로 구성)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평가업무의 대부분은 '91.6.5일의 권고로써 종료되었으며(각 평가팀의 평가대상기관 방문시마다 연방정부 및 기관소재지 지방정부의 대표자 1명씩 참여), 평가된 각 연구기관들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음.
  - 대학연구로 이양
  -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설립
  - 연방 및 지방정부 출연기관화 : Max-Planck 협회 또는 Fraunhofer 협회의 연구소, 대형 연구기관 또는 "Blauen Liste"의 신규기관으로 설립
  - 경제계로 이양시키기 위하여 기관성격의 연구 종료

- o 학술원(Wissenschaftsrat)의 권고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음.
  - 과학의 질과 자체적인 결정력을 강화
  - 훌륭한 연구잠재력을 유지
  - 대학, 대학 외부 및 산업계의 연구는 정선된 내용에서 수행
  - 과학분야의 경쟁을 장려
  
- o 학술원(Wissenschaftsrat)의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는 “연방-지방정부 공동위원회”(Bund-Laender-Kommission)임.
  
- o 학술원(Wissenschaftsrat)은 신규연방지역에 대학 외의 연구기관으로서 약 11,000개의 일자리의 설치와 대학의 연구 및 강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한 추진실적은 연방연구기술부(BMFT)에 따르면, '91.10월 현재 신설 5개주(구동독 5개주)에 총 90개의 연구기관 및 분소 또는 연구그룹을 설치함으로써 총 7,130명 이상의 연구직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신규 구축과정을 거쳐 새로 설치된 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음.
  - 3개 신규 대형연구소(GFE) 및 대형연구소의 8개 분소
  -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동출연하며, 소위 “Blauen Liste”(청색 목록 기관)라고 불리우는 24개 연구기관 및 4개 분소
  - Fraunhofer 협회의 9개 연구기관 및 12개 분소
  - Max-Planck 협회의 2개 연구기관, 28개 연구그룹 및 7개 센터
  
- o 또한, 대학 개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2,000명의 구아카데미 종사자들을 대학으로 투입하여 연구 및 강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학인력 결집 프로그램(WIP)은 당초 2년간('92/'93) 4억 DM를 배정한 바 있으나, 지난 7월 등 프로그램을 5년으로 연장하고 2억 DM(이중 1.5억 DM는 연방재원)을 추가하여 총 6억 DM를 배정키로 함. 이에 따라 약 1,920명의 구소련 과학아카데미 종사자가 대학에서 종사하게 됨.

- o 한편, 연방노동사회부 관할업무로서 연방노동청이 주관하는 “ 구동독 경기 부양책” (Aufschwung Ost)에 의해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소속 과학자들에 대한 고용창출조치(ABM)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약 2,125명의 과학자들과, 또한 다른 재원에 의한 연구부문에서 약 2,350명이 종사하고 있음.
- o 신설주의 연구촉진을 위한 BMFT의 1992년도 예산으로서 신규연구기관 출연금은 약 5억 8,500만 DM(약 2,800억원이며, 총 비용의 약 66%로서 나머지는 소재지 지방정부가 부담), 전문분야별 프로젝트 수행에 의하여 약 6억 5,000만 DM(약 3,120억원)가 신설주의 연구개발계획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 구동독 경기 부양책” (Aufschwung Ost)에 의해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소속 과학자들의 대학진출 또는 연구용역 전문회사에서 계약에 의한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약 3억 DM가 배정되어 있음.
- o BMFT의 1993년도 예산(초안)은 총 99억 DM중 신설주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약 17억 5,000만 DM('92년 대비 9.4% 증가)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중 기관운영 출연금은 약 7억 35,000 DM, 프로젝트 수행에 의한 촉진계획에 약 7억 5,000만 DM, 그리고 대학개편 프로그램에 약 2억 7,200만 DM를 배정하고 있음.
- o 연방 및 각 지방정부의 연구체계 구축에 있어 부각되는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됨.
  - 신규연구기관에 대한 확고한 투자계획 수립
  - 신규연구기관의 관리직 임명 촉진
  - 과학인력 결집 프로그램(WIP)의 범주에서 구 과학아카데미의 과학자들에 대한 대학내 임명 지원

## 4. 사회분야 통합

### 4-1 노동현황

○ 구동독지역 총 취업인구 감소추세(1990~1992)

(단위 : 천명)

	1990				1991				199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 전 계	9 568	9 130	8 674	8 048	7 770	7 264	6 902	6 708	6 315	6 201
- 농림수산업	960	830	770	600	560	478	430	382	335	290
- 공 업	4 266	4 097	3 805	3 517	3 385	3 074	2 727	2 540	2 198	2 120
- 무역 및 교통	1 623	1 547	1 469	1 359	1 303	1 303	1 265	1 243	1 196	1 200
- 서비스업, 국가	2 719	2 656	2 630	2 560	2 481	2 328	2 246	2 166	2 190	2 187
- 고용창출 조치 (ABM)	-	-	-	12	41	101	234	357	396	404
○ 1989 4/4분기 대비 감소	-166	-624	-1 060	-1 706	-1 984	-2 470	-2 852	-3 046	-3 499	-3 553
- 실업자	13	83	309	556	756	835	1 023	1 037	1 254	1 172
- Pendler ①	14	28	85	145	226	320	400	482	526	534
- 이주자	129	166	221	299	352	364	416	648	460	512
- 조기 은퇴자	45	190	310	410	430	516	563	661	776	761

① 주거지는 동독지역에 있으면서 서독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사람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

- 과거 사회주의 부실경제의 유산으로 형식적인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생산성이 없는 일자리는 통독이후 경제구조 재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되었음.

- 1992년 2/4분기 총 취업인구는 620만으로 1989년 4/4분기 대비, 355만이 감소

- 분야별로는 서비스업(은행과 보험회사가 주)을 제외하고는 현저하게 취업인구가 감소하였는데, 1990년 1/4분기에 비해 농림수산업 분야는 96만에서 29만으로 줄어들었고, 공업분야는 426만에서 212만으로 감소

o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전문인력 이주 지속(위 도표 참조)

- 임금격차, 자녀교육, 문화생활 향유 가능성 고려
- 통독이후 1992년 6월말까지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51만명 이주(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사람)
- 집은 동독에 있으면서, 서독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Pendler) 53만('92년 6월말 현재)

o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실업 추세

(단위 : 천명)

기 간	전 체	공식 실업	은폐된 형태의 실업상태			
			단축노동자	고용창출조치 해 당 자	전직훈련자	
'90	1/4	13	13	-	-	
	2/4	83	83	-	-	
	3/4	906	309	1,295	-	
	4/4	1,393	556	1,736	12	24
'91	1/4	1,893	756	1,926	41	59
	2/4	2,144	835	1,962	101	108
	3/4	2,243	1,023	1,464	234	157
	4/4	2,184	1,037	1,113	357	201
'92	1/4	2,160	1,254	511	396	251
	2/4	2,106	1,172	440	404	310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

- 공식적인 실업자는 '92년 6월말 현재 117만이나, 단축노동자, 정부지원 고용창출조치(ABM)해당자, 전직훈련자 등을 합하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은 210만명에 이릅니다.

○ 통독이후 동·서독 지역 고용시장 발전 추세

연·월	실업자 (천명)		단축조업자 (천명)		실업률 (%)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1990.10 (통독)	1,687	537	39	1,704	6.5	6.1
1991. 1	1,874	757	93	1,856	7.0	8.6
1991.10 (통독1년)	1,599	1,049	173	1,199	6.0	11.9
1992. 1	1,875	1,343	214	521	6.9	17.0
1992. 8 (통독2년)	1,821	1,169	228	287	6.0	14.4

- 구동독지역의 실업자는 통독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으나, 현재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
  - 실업률은 통독당시 6.1%, '92년초 17%, 2년이 지난 현재 14.4%
- 구서독지역의 실업자는 통독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줄어들다가, 그 이후부터는 증대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대책 마련

- 실업수당 지급
- 고용 알선
- 각 기업체와 협력하여 고용 창출 조치(ABM) 확대
- 전직·자질 향상훈련 실시

○ 노조통합 현황(노조 회원수)

(단위 : 천명)

노 조	1989 (서독)	1990 (통합 이후)
○ 독일 노총(DGB)	7,861	11,649
○ 독일 사무노조(DAG)	504	573
○ 독일 공무원 연맹(DBB)	794	998

## 4-2 생활수준

### ○ 동·서독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

#### - 노동자

- 구동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 1,647 DM('91년)
- 구서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 3,697 DM('91년)
- 구동독 평균실업수당 : 1,038~1,120 DM('91년 구동독 노동자  
평균임금의 63~68% 수준)

#### - 공공기관 종사자

- 200만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중 새로운 행정기관에 인수되지 못한 자들은 6개월(50세 이하)~9개월(50세 이상)동안 최종봉급의 70%를 받는 대기 경과기간을 거친후 자동실직됨.
- 현재 168만에 이르는 잔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서독지역의 70%('92년 5월 1일부터)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음.

#### - 연금 생활자

- 화폐·경제·사회통합 당시 구동독지역의 연금수준은 구서독수준의 40% 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2.7.1부터는 62% 수준임.

### ○ 통독전에 비해 구동독지역 실질임금은 상승 (Ifo 연구소)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으로부터 막대한 사회보장 이전 지출과 명목 임금상승에 기인함.

- '91년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 재정이전 지출된 1,530억 DM (IW 경제연구소 추정)중 38%인 580억이 투자부분에 활용되고, 62%인 950억 DM은 사회보장경비 (서독 수준으로의 실업수당,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등) 지출에 사용되었음.

- 2명의 취업자가 있는 4인 가족의 평균임금은 3,691 DM으로 '89년에 비해 실질임금 28% 상승

- 1명의 취업자에 1명이 실업수당을 받는 4인 가족의 평균임금은 3,436 DM으로 '89년에 비해 실질임금 19.1% 상승

## 4-3 사회보장제도 확립

### 0 구동독지역에 실시할 사회보장의 원칙

-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체제를 도입함.
  -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각 사회보험은 국가의 법적 감독하에 각각 공적인 자치기구를 두어 실시함.
  - 각 사회보험은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하며 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은 서독의 부담율로 하고 피용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각 보험의 급부수준은 피보험자의 보수수준에 기초하여 결정
- 연금, 의료, 산재보험의 사무를 우선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되, 수지결산은 각 보험별로 처리함.
  - 1991.1.1까지 연금, 의료, 산재의 각 보험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서독의 각 보험제도와 동일한 각 보험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 동독에서 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 의무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유지함.
  - 자영업자나 자유업자의 경우 기타보험에 의한 보장이 있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부 한도액은 서독의 사회보험원칙에 기초하여 별도로 정함.

### 0 연금제도

-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제20조에 의거 동독의 연금법이 서독의 연금법과 같아지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 동독의 강제가입 연금, 임의연금 등은 서독과 같이 하나의 연금 체계로 통합됨.



- 동독지역에서 새로 산정 지급되는 연금(서독 마르크로 연금 지급) 수준은 동독의 평균 소득자로서 강제 및 임의연금에 45년간을 가입한 자가 현 동독 평균소득의 70%가 되도록 하고 보험기간에 따라 가감함. 이때 새로 산정되는 연금액이 종전의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연금액을 지급
  - 최저연금액('90년에 495 마르크)에 미달되는 자에게는 국가예산으로 연금과 최저연금액과의 차액을 사회부조 보조금으로 지급('96년 말까지)
  - 향후 연금액은 동독지역의 임금상승률에 따라 조정
- 연금 관리기구의 설치 운영
- 지역 연금보험 조직으로서 1991.1.1 동독 신설 5개주에 주 보험사무소가 설치됨(임금노동자, 철도노동자, 선원에 대한 연금보험 담당).
  - 붕급생활자, 수공업자, 광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 연방보험기관이 동독 전지역으로 관할권을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함.
-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원
- 연방정부에서 동독지역의 연금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90년중 20억 DM를 보조
  - 91년중 연방정부의 보조계획은 없는데(연금 기여금에 의해 충당), 92.1.1부터 연금개혁법이 동·서독지역에 동시 발효되어 동독지역의 연금재정에 190억 DM의 적자가 발생함.

동독지역의 연금보험 보험료 부담내용('91)

구	분	서독지역	동독지역
0	연금보험료율(피용자 및 고용자)	9.35%	9.35%
0	연금적용 최고한도 월수입	6,500 DM	3,000 DM
0	연금 의무가입 최저 월수입	480 DM	220 DM
0	고용자가 피용자의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피고용자의 최고 월수입	610 DM	280 DM
0	91년 전피용자 표준보수 월액	3,360 DM	1,540 DM

- 연금수준 향상 내역

- 동·서독지역 연금생활자 연금수령액 증가 추이

(단위 : DM)

	'90.6.30	'90.7.1	'91.1.1	'92.1.1	'92.7.1
구서독지역(A)	1,616	1,667	1,667	1,751	1,798
구동독지역(B)	470	672	773	993	1,120
B / A (%)	29	40	46	57	62

※ 45년동안 연금보험 기여금을 불입한 연금수령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 기준

o 의료보험 제도

-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2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정해져 있음.

- 동독은 서독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실시함.
- 동독에서도 서독에서 질병시 6주까지 고용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실시함.
- 연금수급자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료는 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1991.1.1 이후 서독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실시와 함께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질병보험기관이 국민에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벌여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음.

- 보험료율

- 동독지역에서는 피고용자 및 고용자 모두에게 6.4%의 보험료율이 동일적용되고, 의무가입의 최고한도 소득은 '91년에 월 2,250 DM(서독의 경우 월 4,875 DM)
- 연금수급자, 실업보험수급자도 각 보험에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0 기타 사회보장제도

- 아동수당(Kindergeld) 추가지원
  - 아동수당이 서독의 제도로 전환됨과 아울러 동독지역에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아동수당이 추가지급됨.
  - 12세 이하 월 45 DM, 13세 이상 16세(직업훈련생 경우 27세)까지 월 60 DM
- 사회부조(Sozialhilfe)
  - 서독식 사회보장체계의 도입으로 동독지역에 사회부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동독지역의 사회부조는 생계부조액이 가구주에 대하여 월 400 DM이며, 임신부, 편모, 질환자, 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기본급의 20% 정도를 추가지급
- 주택 보조금 지급

0 사회보장 행정체계의 확립 지원

- 인력, 기술 등의 지원
  - 동·서독의 각 주간,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어 행정요원의 상호파견을 통해 동독지역 사회보장분야 담당 공무원을 지도하고, 동독출신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 연방부처, 연방사회보험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지도 및 지원
  - 서독의 자매주나 도시에서 병원 경영자, 사회복지 전문가 등을 동독의 자매주에 파견하여 지도 및 지원
- 사회보장 전문교육 및 홍보
  - 뒤셀도르프, 뮌헨 등 의료관계 전문교육기관에서 동독지역 의사에 대한 서독 사회복지 행정일반 및 전문교육을 실시
  - 연금·질병금고 등 사회복지 공공기관에서도 동독지역 근무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
  - 연방 노동성·보건성 등에서 동독지역 국민들에게 각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홍보하려는 책자 및 팸프렛을 제작하여 배포

## 4-4 주택문제

### 가. 주택분야 소유권의 확정

- 통합조약 22조 4항과 의정서 주석 13항에 의하면 구동독 인민 공유(국유) 재산중 국유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주택협동조합(Wohnungsgenossenschaft)에 의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소유권을 이양하기로 되어 있음.
  - 각 지방행정기관 (Gemeinde, Staedte, Landkreise)은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 처분권이 있는 바, 해당 재산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경제구조에 적응하도록 완전 사유화시키던가, 지방행정기관이 지분을 가지면서 회사형태로 전환시킴.
  - 다만 재산법에 의해 이전 몰수재산에 대한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해당재산은 상기조치와 관계없이 반환되거나, 보상조치됨.
- 각 지방행정기관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건설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현대화와 보수유지를 위해 해당재산을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사유화할 책임이 있고 각 주정부는 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그 사유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지방행정기관이 자본지분을 갖는 개인회사 형태 (유한회사, 주식회사)
    - 주택조합의 소유로 대지와 건물 이관
    - 제3자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매각
    - 주택소유권법 (Wohnungseigentumsgesetz)에 의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인별 주택재산 형성자에게 매각
  - 그러나 해당재산의 제3자에게 완전 매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을 받음.
    - 그 대지가 사회복지주택 (Soziale Wohnung)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 주택조합이나 개인의 주택재산 형성의 목적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주택사정 해소에 이용되는 경우

-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전 몰수재산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만 이루어짐.
  - 재산법 제5조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동주택(Complexe Wohnungsban)이나 단지(Siedlungsbau) 조성에 사용될 경우
  - 통합조약 22조 4항 2절에 의해 해당재산이 주택부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건축 시행계획하에 포함된 경우('90.10. 3 이후)
  - 재산법 5조 1항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유치원, 병원 등)

#### 나. 구동독지역 임대료 인상문제

- 통합조약에서는 동독지역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주택임대료가 책정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인상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구동독지역의 주택환경은 너무도 열악하므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주인들이 주택개량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의욕을 갖게하고, 주택시장을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통독이후 2차에 걸쳐 기본임대료를 인상키로 함.
  - 제1차 인상(1991.8)
    - 평방 m당 3 DM 인상(평균 기본임대료 1 DM + 난방비 2 DM)
  - 제2차 인상(1992.8)
    - 1993.1.1부터 목욕탕과 실내 화장실을 갖춘 주택에 한하여 평방 m당 기본임대료를 2.10 DM으로 인상
    - 1994.1.1부터는 평방 m당 2.70 DM으로 인상
- 대신 소득수준이 일정액 미만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보조금을 지급
  - 4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700~1,800 DM이고 임대료를 280~320 DM을 지불할 경우, 100 DM의 주택보조금을 받음.

- 2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200~1,300 DM이고 임대료가 240~280 DM인 경우, 100 DM의 주택보조금을 받음.

다. 구동독지역 주택 현대화 · 보수

- o 구동독의 주택은 구서독 수준과 비교해 볼때 주택의 규모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공간으로서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때 전체 주택의 약 30% 정도가 당장 보수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
  - 통독 직전 동 · 서독 주택현황 비교

	주택규모	목욕탕 · 샤워 시설 구비	수세식변소 구비	평균 주택 년수	평균임대료 (평방m당)
서 독	85 m <sup>2</sup>	99 %	94 %	42 년	6 DM
동 독	65 m <sup>2</sup>	79 %	72 %	58 년	1 DM

- o 통독후 구동독의 주택 유지 · 보수를 위해 연방정부는 주택용자 보조금 100억 DM을 투입함.
  - 주거 현대화를 위해 각 개인, 건설업자,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방 m당 500 DM의 한도 내에서 6.75%의 저리로 5년 거치 25년 상환의 용자 지원

o 구동독지역 주택 신축 · 보수 현황

(단위 : 백만 DM)

주 별	주택건설 수 주택	
	'91. 1/4	'91. 2/4
o 브란덴부르크	276	188
o 메클렌부르크 포어퍼머른	161	148
o 작 센	236	190
o 작센-안할트	218	178
o 튀링겐	172	147
o 동 베를린	187	194

#### 4-5 환경오염 제거 문제

- 계획경제 실패의 유산으로서 그 체제가 안고 있던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구동독지역에 환경오염 전자가 심각함.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무슨일을 하려하지 않았음으로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음.
    - 반면 서독에서는 각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주위의 것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쓰레기 분리수거, 세계 안쓰기 등)
  - 계획경제체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의 할당량 달성만을 강요해, 생산수단 투자에 있어 환경보호적 장치마련과 환경보호적인 산업구조적 조정을 어렵게 만듦.
  -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자원 같은 경우 억제작용이 없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환경오염 가중
  -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로 환경보호 기술과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보호분야의 국제적인 노동분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됨.
    - 더구나 자립경제체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더라도 사용 가능한 자국의 자원을 써야하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킴.
  - 농업분야에서 생산기술이 열악하고, 환경을 해치는 화학비료·농약을 남용, 대지오염을 가중시킴.
- 구동독지역 환경오염 실태
  - 수질오염
    - 하천의 42%, 호수나 저수지의 24%가 오염 때문에 정수처리를 하여도 식수로 사용 불가능

- 환경기준으로 볼때 전체 수량의 3%만이 양호
  - 95% 이상의 산업폐수가 불량한 정화시설을 거쳐 하수처리
  - 대기오염
    - 주민 1인당 먼지량과 아황산가스량은 서독의 8배
    - 구동독 인구중 430만이 먼지량이 서독기준치보다 높은 곳에서 거주하며, 600만은 아황산가스량이 서독기준치보다 높은 곳에서 거주
  - 쓰레기 오염
    - 1인당 구동독주민의 쓰레기량은 175 kg, 구서독 주민은 그것의 50% 수준임.
  - 토지 황폐화
    - 전체 토지의 40%가 갈탄채취 및 적재, 휴경없는 농작물 경작, 관리소홀 등으로 황무지화
    - 전체 토지의 10% 가량을 동독 인민군과 소련군이 마구 사용하여 황폐화
- 구동독 국유기업의 환경오염 잔재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인수를 꺼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환경문제 해결이 어려움.
- 영업상 또는 경제활동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과거 동독기업이나 대지를 인수하려는 자에게 '90.7.1(화폐·경제·사회통합 발효시점이자 동독지역에 서독의 법에 준하는 환경보호법 도입시점임) 이전에 원인 제공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의 책임을 면제함.
- 이러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구채무(Altlast) 면제신청은 주정부 해당 관청에 늦어도 '91.12.31까지 제출되어야 함.
- 이러한 조치로 구동독 공유기업 매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환경오염잔재 문제(과거 서독의 법률적 기준으로 각종 환경정화와 시설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자원 소요)는 매입투자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청이 인수하게 됨.



o 2,000년까지 서독수준으로 동독지역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0억 DM으로 추정(Ifo 경제연구소)

- 폐수처리 시설 : 1,250억 DM
- 공기정화 시설 : 230억 DM
- 쓰레기처리 시설 : 340억 DM
- 오염지대 정화 : 110억 DM
- 식수문제 해결 : 170억 DM

o 정부의 구동독지역 환경개선 프로그램

- 심각한 환경오염 부담지역에 긴급 대응책을 마련, 환경정화와 아울러 실업 감소 도모
  - 이미 조사된 12,250에 달하는 구오염 잔재 부담지역중 심각한 196개 지역에 우선 정화 실시
  - 25만 ha에 이르는 구동독과 소련군 주둔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 강유역에 27개 정수시설 긴급 건설
-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환경정화 국제전시회 개최, 초현대적 환경정화기술 도입
  - 특수 폐기물 적치장 건립
- 부자재원 마련
  - 폐기물 특별부과금, 탄산가스 특별부과금 징수 예정
  - 사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정화회사 설립시 세제상 혜택 부여
- 구동독의 환경정화인력 자질 향상
  - 환경전문가를 파견, 자문·교육 훈련

#### 4-6 의료·보건 분야

0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제22조에 의료·보건 분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동독 국민의 의료 및 간호를 위하여 현행 동독의 의료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영의료기관의 사유화를 추진하여 서독식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 동독정부는 통독이전에 개업의, 개업치과의, 약국 그리고 자영 독립 의료기관과 민영 공익병원의 개설에 관한 허가업무를 실시함.

0 의료·보건 체계의 구조 조정

- '92.12.31까지 기존의 종합병원, 응급병원, 국영진료실, 직장내 보건 의료실은 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 기존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의사들이 개업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거나 기존시설을 임대
  - 과거 국가에 고용되었던 의사중 2/3 정도가 개업
  - 노령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해 개업이 곤란한 의사들도 각 의료기관에서 종래와 다른형태로 고용됨(점수에 의한 급료지급 등)
- 기존 종합병원이나 응급병원도 종교계 등 공익운영권자(또는 민간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융자지원 또는 투자보조금 지원
- 의료기관이 서독지역과 평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종합병원 정비 등 확보계획을 수립중
  - 동독지역에 약 300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책 지원금중 50억 DM를 종합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각 주에서는 지역산업 촉진, 도로, 주택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경미한 액수만을 종합병원 분야에 투자
- 종합병원의 고위 및 중급 경영진을 서독지역에서 채용하거나, 자매주 종합병원의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이동 근무
- 구동독지역 병원 종사자, 병원 병상수 증감 현황

	병원 병상수 (개)		간 호 원 (명)		의 사 (명)	
	1989	1991	1990	1991	1990	1991
브란덴부르크	24,596	25,237	4,369	4,498	1,064	1,190
메클렌부르크-포퍼머른	20,256	15,524	5,752	5,488	1,036	1,018
작센	49,447	43,275	6,749	7,854	3,435	3,561
작센-안할트	28,903	25,808	8,560	8,556	2,240	2,332
튀링겐	25,388	21,312	4,705	4,839	1,628	1,720
(동)베를린	14,715	14,958	—	—	—	—
전 체	163,305	146,114	30,135	31,235	9,403	9,821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3월 19일자 보고서

o 의약품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

- 국유화 약국의 사유화 추진과 함께 약품의 공급이 확대
  - 과거 동독에 2,000종의 약품이 거래되었는데, 70,000여종으로 확대
  - 약품을 중앙집권적 단일 도매상이 공급하였으나, 여러 도매상에 의한 공급체계로 전환
- 동독의료보험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회사, 도매상, 약국에서 '91.4.1부터 '93.12.31까지 22억 DM를 각 질병보험금고에서 지원하기로 함.

## 5. 교육분야 통합

### 가. 보통교육(초·중·고)

#### o 학제의 변경 문제

- 구동독지역에 단선형 학제 대신, 구서독의 다원적인 학제가 도입됨.
  - 10년 공통과정에 2년의 예비과정 과정 뿐이었으나, 초등과정(국민학교, 1-(4)6학년), 중등과정(종합학교, 김나지움, 실업학교(5)7-10학년), 고등과정(종합학교, 김나지움 11-13학년)으로 분화됨.
  - 학제의 변경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94년까지 과도기간동안 기존학제의 졸업증 및 자격증이 그대로 인정됨.
- 교육은 주정부 소관이므로 신설 5개주(구동독지역)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방향은 구서독을 기준으로 정비되어 질 것임.

#### o 기존 교사의 해고 및 재교육 문제

- 각 주별 공통적인 교사의 해고기준
  - SED의 대중외곽 청소년 조직이었던 동독 자유청년연맹(FDJ)의 간부, SED 각 지부 지도위원, 국가보위부(Stasi) 및 동독인민군(NVA) 및 국가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
  - 후반기 모드로 정권하에서 해당전공지식이 없이도 교직을 받은자
  - 국가보위부(Stasi)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했던 자
  - 다른 전공없이 국가 및 사회강좌(Staatsbuengerkunde)를 강의한 교사
  - 러시아어 교사
  - 동독 어린이단체인 "Pionier Gruppe" 의 지도교사
- 각주별로 상기 기준에 의한 교사심사는 '91.5월까지 서면질의를 통해 마쳤으며, 현재는 각 주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공무원으로서 최종 채용여부는 제반 자격조건(헌법정신에 충실, 해당자격 소지)이 충족되어야 결정됨.

- 각 주별로 Stasi 문서 보관소(Ganck-Behoerde)에 잔류교사들이 과거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중임.
- 가장 빠르게 학교체계를 확립한 Brandenburg주는 34,500명의 교사중 6,500명을 해고했으며, 이중 1,000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됨.
- 구동독지역 교사들은 구서독지역에 비해 현재 60%의 봉급을 받고 있으나, 수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80% 정도의 실질임금을 받고 있음.
- 잔류교사의 재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교사교육법(Lehrerbildungsgesetz)을 입안중임.
  - 구동독의 교사의 자질은 구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짐.
  - 사회과목과 영어과목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시급

#### o 교과서 배급

- 통독이전에도 3천 3백만 마르크의 예산으로 구서독이 구동독에 교재 공급
  - 예산상 독일어, 역사, 지리학, 영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8~12학년 학생에 제한하여 교재를 공급했었음.
- 구서독에는 학교교재 출판사(Volkundwissen Verlag)가 단 1개 밖에 없었으나, 통독이후 이 출판사도 구서독 출판사에 병합되었음. 구동독 6,000개의 학교에서는 600종의 교재중 학교별로 선호하는 교재를 고를 수 있게 됨.
- Curriculum Reformskommission이 결성되어 현재 교과내용을 논의중

#### o 학교시설 확충

- 연방정부는 “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Aufschwung Ost)을 만들어 구동독 경제재건을 꾀하고 있는 바, 이중에 50억 DM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학교, 병원, 사회보호시설(Soziale Pflegeeinrichtung) 신·개축 비용으로 주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음. 그중 학교시설비로 지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발주하고 있음.

- 각 주별로 세급에 따라 할당되는 예산이 다르므로 주별 경제능력에 따름.
- 구동독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규모가 작으므로 학교건물로 계속 쓰이는 경우엔 장기적인 증축계획 필요

0 일반교육(대학이전까지) 통합 현황

	구 동 독 지 역	구 서 독 지 역	전 체
학 교 수 ( '90년말 현재 )	6,056	32,238	38,294
학 생 수 ( '91.9 현재 )	2,145,000 (통독전 '90.9 : 2,080,000)	6,988,000	9,113,000

나. 대학교육(대학교 이상)

0 구동독 대학 잔재 청산

- 통합조약 13조에 의거 신설 5개주와 베를린 주정부는 '91.1.1부터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구체제와 관련된 학과와 연구기관을 철폐키로 하고, 해당연구종사자는 이 기간동안 기본봉급의 70%를 받으며 전직 또는 퇴직시키기로 결정함.
  - 동 조약 13조에 의하면, 주정부는 주정부 업무 관할에 속하는 기존 동독의 학술·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존속 여부와 철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관련 학과는 이념문제와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학과로 해당자는 약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철폐학과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관련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연구소

- 또한 SED 정권 붕괴이후 대학 내부적으로 구체제와 관련한 잔재 정화작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통독이후 동독지역 대학에도 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학 자치권이 도입되고 대학교육기본법에 의해 주요정책결정위원회(Beschlusssgremien)의 교수들에게 자율권이 보장되었는 바, 과거 구체제와 관련있는 교수들이나 무능력한 학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과거의 연고를 활용, 등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였음.
  - 관련 학과의 경우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사회이론”으로 “과학적 공산주의”를 “과학적 정치사회학”으로 학과이름만 바꾸는 정도에 그침.
- 한편, 이데올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학 학과 외에도 특수한 연구기관과 같은 경우는 현재 주정부의 재정보조능력이 없어 철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91.7.11 연방과 각 주는 신설5개주의 대학과 연구를 위한 공동개혁안에 합의함.

- 이 개혁안의 목표는 대학의 인사개혁, 유능한 학자들의 신설 5개주내 계속근무 보장, 신진학자 육성, 대학생과 학자의 자질강화, 학술연구단체와 개별연구인의 대학으로 흡수, 대학분야의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하부구조 확충에 있음.
- 동 계획은 '91~'95 5년간 수행되며, 총예산 소요액은 17억 6천만 DM으로 연방정부가 75%, 각 주가 25%를 부담
- 강의실, 학생기숙사, 교수주택 등 대학시설의 개선을 위해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응책으로부터 '91, '92년도에 각각 2억 DM씩 지원

o 대학 통합 현황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전 체
학 교 수 (전문대학 포함)	53 (7)	248 (11)	301
학 생 수	132,000	1,585,000	1,717,000

( )는 베를린 소재 대학수이며, 전체 대학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6. 체육분야 통합

- '90.12.15 신설 5개주의 주립체육협회가 독일체육연맹(DSB)에 가입함으로써 45년이래 분단되었던 독일체육계가 통일됨.
  -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체육분야 최고기관인 독일체육연맹은 구동독의 신입회원 200만과 더불어 회원수가 2,350만명이 되었으며, 총재에 Hans Hansen이 재선됨.
  - 내무성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7차 연방체육 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체육예산을 2억 4,800만 DM으로 책정되었는 바, 그중 1억 3,500만 DM이 신설 5개주를 위해 사용될 것임.
  - 동·서독 스포츠의 기구적 통합은 일단 거의 완료되었으나, 도핑을 무릅쓰고서라도 스포츠를 이데올로기의 교련장으로 보던 SED 독재정권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공동성장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
  -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구동독 스포츠의 “업적”으로 지칭되는 초정상급 선수의 능력 잠재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35,000개의 구동독 체육시설의 확장과 개축에 필요한 돈은 8억 DM인 것으로 추정됨.
- 정상급 스포츠는 연방정부의 국가지원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음.
  - 스포츠의학, 트레이닝 진단법, 교육학적·심리학적 상담 등을 포함한 완벽한 서비스를 갖춘 15개의 올림픽 지원 기지에 구동독의 6대 스포츠 클럽이 합류하여 정상급 스포츠인 육성의 중심지가 됨.



- 통합에는 인력감축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나 동·서베를린의 스포츠 통합으로 Berlin을 독일의 최대 올림픽 지원 기지화 하였으며, 포츠담 소재 구동독군 스포츠클럽은 독일연방군 체육학교의 분교가 됨.
  - 구동독의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하던 24개의 구동독 청소년 스포츠학교는 그중 '92년 현재 18개가 통독후에도 계속 유지 존속되어 체육장려 김나지움이나 실습학교의 귀감이 되도록 함.
    - 연방내무성은 재질있는 청소년 체육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93년에 5백만 DM을 투자할 예정
  - 구동독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던 6,200명의 정상급 운동선수들중 1,500명만이 독일체육 보조기금으로부터 총 2,000만 DM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계속
- 0 구동독에서 주업으로 종사하던 5,000명의 트레이너의 진로문제가 심각함.
- 그중 260명은 계속해서 주임 트레이너로 근무할 수 있으며, 300명은 명예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의 인수 및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구서독 트레이너의 능력과 비교할때 구서독 트레이너의 직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구동독 체육협회(DTSB)의 유명 트레이너들은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함.
- 0 구동독의 체육지도자들은 동독체육의 국제적 명성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구화 되어 사회주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을 관장한 과거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됨.

- 동·서독 NOC만이 유일한 통일(Vereinigung)을 달성했던 반면 기타 체육단체는 구동독단체가 구서독단체에 가입(Beitritt)한 형식을 취했는데 구동독 NOC의 총재였던 J. Weiskopf(라이프치히시 치과의사)는 통일독일 NOC의 부총재가 됨.
  - 구동독 체육협회(DTSB)의 청산인으로서 de Maiziere 수상시 정무차관이었던 Horst Joke는 구동독 NOC의 Ewald 총재시 대변인이었으며 구동독 FDJ의 “청소년 세계”라는 단체의 책임자였던 Volker Klige와 함께 전독 NOC의 회원이 됨.
- 구동독지역에서 체육은 국가체육 중심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특수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 문화분야에서처럼 체육도 집단스포츠만이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사교를 위한 각종 동호단체 성격을 갖도록 대중체육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각종 체육단체의 민주적 체육구조 구축은 구서독에 의한 출발금융지원, 노우하우 이전 및 주 단위, 시·군단위, 협회 단위로 연대적 파트너십으로 실제적으로 지원될 예정임.
  - 구동독지역에는 현재 동호인 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200만 정도 되는데, 클럽의 50% 정도만이 구서독지역 수준에 상응함.
  - 기초적 스포츠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한 협회가 자생력이 있어야 하나 인사 및 물질적, 재정적으로 공고한 기반은 아직도 조성되지 않아 존립 문제가 매우 심각함.
- 소홀하게 방치된 체육시설의 정비역시 전반적으로 재정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과중한 부담거리임.
- 통일이후 처음으로 동·서독 팀이 단일팀으로 참가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8개로 메달 순위 3위를 차지함.
- 통합팀에는 196명의 구동독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여, 독일의 메달획득에 크게 기여함.

## 7. 언론분야 통합

### 가. 방송체제

#### ○ 구동독 방송 해체와 신규방송사 설립

- '91.12.31 통일독일정부는 구동독에서 당과 국가의 시녀노릇을 하던 방송의 해체작업이 성공리에 완료되어 주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영 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중체제로 재편됨. 이 과정에서 과거 동독 국영 TV 및 라디오 방송에서 근무하던 14,000명의 인원중 11,000명이 해직되고, 주로 기술직원인 3,000여명만이 구동독지역에 신설된 공영방송사에 취직이 됨.
- 구동독 방송의 해체작업과 함께 신규방송사 설립이 추진됨.
- 신설 5개주 남부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
  - 독일 신설주(구동독)의 남쪽에 위치한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튀링겐(Thuringen) 등 3개주는 “중부 독일방송(Mitteldeutscher Rundfunk : MDR)”을 설립하였으며, 사장에 Udo Reiter를 임명
  - 중부독일방송(MDR)의 사장직은 드레스덴(Dresden), 에르푸르트(Erfurt),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 소재하게 될 주 방송국의 장이 교대로 맡게 될 것이며, 본사의 소재지는 라이프찌히(Leipzig)로 함.
- 신설 5개주 북부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
  - 북부지역에 속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는 동부독일 방송(Ostdeutscher Rundfunk Brandenburg)을 설립하였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퍼머른(Mecklenburg-Vorpommern) 주는 기존 서독의 방송인 북부독일 방송(Norddeutscher Rundfunk)에 가입함.

○ 통일독일후의 방송체제 개편을 위한 제반조치

- 1991년 7월말 16개주의 수상및 시장들은 87년 4월 구서독 11개주들이 체결한 “ 방송구조 재편에 관한 협정(1987.4월)” 을 통일후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회의는 ZDF의 방송협의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정당간 구성비율 문제와 각 방송공사의 유럽 미디어와의 협력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주간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성과없이 끝났음. 91.8.31 재차 회의를 개최, 각 주 수상들은 “ 신연방구조 재편에 관한 협정” 에 합의했으며, 동 협정은 92.1.1 발효됨.
- 각 주 수상들의 합의로 분단상황하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서독의 국익홍보를 해왔던 라디오방송, 즉 Deutsche Welle, Deutschlandfunk, Rias 방송이 하나의 방송공사로 통합될 예정이며, 특히 해외홍보용 TV 방송도 함. ('92.4.1부터 Deutschland Welle는 구주지역에 대한 TV 홍보방송을 시작)
  - 이 세방송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연간 약 6억 마르크를 지원해왔음.

- 현재 독일에서는 방송의 설립권이 주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14개 주와 2개 자유시(Hamburg, Bremen)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11개의 방송공사를 설립하고 있음(라디오와 TV 겸영)

나. 구동독 신문·잡지 개편

- 이전 동독에서 발간되던 신문의 경우 많은 신문이 발간을 계속하고 있으나, 재정난 등으로 발행부수가 격감되는 상황에서 이전 서독의 언론재벌들이 투자효과를 노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규설립을 하거나, 동독신문과의 합작을 통해 동독신문을 인수 운영해 가고 있음.

- o 구동독지역의 90개의 일간지는 현재 과도기로서 대부분이 서독 언론그룹과 합작으로 운영되거나 서독자본에 의해서 신규 설립되고 있으며, 전 동독 SED의 기관지는 신탁재산으로 관리됨. 현재 이전동독에서 발간되는 중요한 일간지는 “ Neues Deutschland” (32만부, 이전동독 SED 기관지, Berlin), “ Junge Welt” (44만부, Berlin), “ Tribuene” (30만부, Berlin), “ Saechsische Zeitung” (54만부, Dresden), “ LVZ Leipziger Volkszeitung” (42만부, Leipzig), “ Mitteldeutsche Zeitung” (54만부, Halle), “ Volksstimme(41만부, Magdeburg) 등이 있음.
- o 독일에는 90.10.8 현재 1,434종의 일간지가 있음. 이중 구서독지역에 1,344종, 구동독지역에 90종류의 일간지가 있음.

## 8. 동·서독간 심리적인 이질성 극복 문제

○ 국가적·제도적인 통일은 행정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2년전에 완료되었지만, 심리적인 장벽 극복을 통한 내적인 통일달성을 위해서는 1세대 정도의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40여년에 걸친 구동독 공산정권의 구동독 주민에 대한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교육의 결과이자, 통독에 따라 생활상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적응압력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임.

- 20세 이하의 청소년층은 새로운 교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과거 분단이전의 민주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체제전환에 따른 갈등이 덜하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양육되고 경력을 쌓아온 20~60세 사이의 장년층이 가장 심각함.

- 이러한 구 동·서독간 상이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경험 및 인식체계를 동등화시켜 양 지역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독재체제를 57년동안(히틀러 독재로부터 통독이 될때까지) 경험한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위로부터의 행정적인 지시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형식의 교육은, 새로운 질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또다른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독일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음.

○ 동독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의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음.

- 과거 공산독재체제는 각 개인을 강요만 하였고, 자신의 불만이나 고민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개개인의 인격을 극도로 변형시켰음.

· 개인의 자발성과 책임의식이 부족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사회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인간의 존재는 인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제도와 구조속에서 규정되어 지는 바, 새로운 제도를 익히는데 동독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함.
- 실업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상실하였음.
  - 구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의 후견에 의해 완전교육과 직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동독후 경쟁사회에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구서독인들에 비해 엄청난 심적 부담임.
  - 더구나 물질적인 생활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생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자기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자기 과거의 노동이 전혀 가치없는 곳에 투입이 되었다는 자기비하와 함께 생의 의미를 재확인 해 봐야 하는 고뇌를 겪고 있음.
- 미해결 재산권 문제가 많은 동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국유(인민공유)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각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내어놓을 경우는 덜한데,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언제 서독지역으로부터 반환신청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 하고 있음.
- 통독이후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가 제기될때 구동독주민들에게는 체제전환에 따른 심적 고통이 존재함.
  - 40년간의 사회주의는 각 개인에게는 기억속에 살아 있는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를 완전히 범죄집단의 역사로 단죄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범자(Mittaeter)로서의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자기가 직접 연루가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던 체제와의 단절은 자기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고통스러운 불안을 수반함.

## 0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방향

- 주민들의 의식속에 잠재된 SED 지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점차 극소화 시켜나감.
  - 모든 주민의 생활영역내에서 “ 당의 진리규정의 독점성 ” 잔재를 제거하고,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탈정치화(Entpolitisierung) 해나감.
  - 국가의 후견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보호 문화’ (Nischenkultur)로부터 탈피
- 새로운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정보와 만남의 광장을 마련함.
  - 획일적인 정보가 아닌, 다양한 이해집단과 학술연구기관, 독립적인 교육기관에 의한 다양한 정보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민주사회에 존재하는 갈등(Konflikt)속에서, 서로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해나가는 “ 민주적인 논쟁 문화 ” (demokratische Streitkultur)가 정착되도록 함.
  - 특히 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결성된 다원적 정당구조에 익숙해지고, 기존의 정치제도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장려
- 구동독지역 청소년층에서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연방정치교육센터 추정에 의하면 청소년층의 1% 미만만이 정치에 관심)과 소비·향락 문화에 대한 심취 등의 문제 해결
-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는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작성 배포



- 현재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수준에서는 연방내무성과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맡고 있음.
  - 각 주정부 산하에 정치교육센터가 있음.
    - 현재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에는 주정부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곳도 있어, 자매결연을 갖고 있는 구서독지역 주정치교육센터가 많은 지원과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정당의 학술재단도 중요한 정치교육기능을 맡고 있음.
  - 각 대학의 연구기관과 종교·사회단체 등도 자체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방정치교육센터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정치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구서독지역·구동독 기관중에는 교회가 구동독 주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의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서독 지역간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구동독 지역에 결핍되어 있는 문화적인 사회간접자본(Kulturelle Infrastruktur)를 확충하는데 많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각종 협회·단체 등 자발적인 이익단체와 동호인 클럽들도 구동독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바, 이들 또한 동·서독인들간의 이질감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바이체커 독일대통령 통독2주년 기념 연설문**

이 자료는 '92년 10월 3일 12시부터 구 동독지역 메클렌부르크 포어퍼머른주 수도 슈베린에서 개최된 통독 2주년 기념식에서 바이제커 독일연방대통령이 행한 연설문 전문을 번역한 것임.

## I.

바로 3년전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온 세계가 모두 이에 축복을 보냈습니다.

독일은 통일된지 2년이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공헌을 통해 많은 구 동독 주민들은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는데, 과거 자유가 없던 때로 되돌아가 보고픈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통일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와 관계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들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

본인은 오데르강안의 가르츠시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과거를 차분히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그곳은 전쟁이 끝날 무렵 어떤 사람이 이미 교회탑에 걸려있던 백색기를 나치스기로 바꿔달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곳입니다.

가르츠시는 구 동독시대에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나름대로 전심전력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하면서 파괴된 교회의 본당에 신자회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활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대변혁 이후 서독인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었던 생필품 시장은 다시 그 지방의 훌륭한 현지 생산품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수공업, 상업 역시 활기있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은 물론 함부르크 인근에 있는 자매도시 벤토르프시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국경 넘어까지 펼쳐진 국립공원으로 인해 독일과 폴란드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의 기간산업이라 할 농업분야에 있어서 근로자수가 3/4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실업문제가 가장 큰 부담거리인데 젊은이들이 이주하였고 구서독지역으로의 장거리 출퇴근자들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상당수의 외국인 망명신청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분위기는 어떠하며, 그 해결전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독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동시에 실망감, 자신감의 결여, 약속에 대한 불신, 미래에의 전망 부재 같은 것도 경험합니다. 경제적·사회적 체험과 인간적인 체험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독에서도 통독의 파급효과는 여러가지 갈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마치 자신이 매일 체험하듯, 다른 사람의 입장과 바꾸어 생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앞으로의 발전추세를 명확하게 예견해 본다는 것은 오늘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대응하거나, 낙관론적으로 처방을 내려본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비관론이나 낙관론은 신뢰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수년간의 실패와 성과만을 되돌아 보았자 단 한치도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현실을 극복하고자 할 때 미래의 목표를 향하는 방향설정이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할 것과 우리가 진실을 인식한 이후 이것을 실천하는 진실한 용기를 가질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진정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고무시켜 줄 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 II.

오늘날 우리 독일인들은 유럽 최대의 인구를 가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결코 이룩해보지 못했던 것이 달성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통일되었는데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 역시 무척 큼니다. 우리들 자신은 새로운 세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현 과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해관계에 대해 분명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독일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내적 통일 달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일 밖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국제적인 임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마치 우리가 통일우선정책 때문에 외국통화를 약화시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상호 이익이 상반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내적통일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도움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유럽은 역사적 전환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변혁은 일어났지만 과연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것인가요? 비록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해도 새 출발은 어디로부터 되어야 합니까? 동독에서는 평화혁명이 일어났지만 서독에서는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독측은 1989년 동독에서 대변혁이 일어났을때 최초의 대응으로서 기존 노선을 견지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동구권이라는 한쪽편 세계가 붕괴한 후 서방측 모델이 그토록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보았던 때도 전후역사에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통일독일이 서방공동체에 더욱 결속되어서 서유럽 통일과정이 결코 후퇴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방측이 결속하여 동구권이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유럽에서도 몇가지 불안정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유럽형성의 기본원칙에 대한 토의가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는 도처에서 민족국가와 같은 과거에 익숙한 상태로 복귀하려는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사람들은 자체의 정체성을 보전하고자 노력하면서도, 거대하고 생소한 국제적인 관료체제에 의해 익숙해진 국가내에서의 소시민적 생활습관이 통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럽 행정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아쉬워 하면서도 자국 화폐의 미래의 가치가 보장될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유럽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의식에 변함이 없습니다. 독일측에서 볼때 유럽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방적 차원이라는 세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연방주의가 우리 속에 깊이 정착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그들의 향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환경보호, 교통, 에너지 공급, 피난민 구제운동 등 중대한 문제가 오로지 국경을 초월해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일상생활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책마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그들과의 공동결정이라는 사실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 독일에서는 이러한 3 대 차원이 서로 건설적 관계하에 발전되도록 우리의 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연방주의를 파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가 전체의 활동,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유럽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데 있어서 교섭력을 약화시켜 버린다면 이러한 연방주의는

다시는 더 강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럽에 있어서의 추진동력이 되어야지 제동장치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구권에서 과거의 결속관계를 해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서방측의 우리들은 더욱 더 결속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구권 세계는 대대적인 민족국가 예로의 복귀과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한편, 동시에 이에 상반하는 진전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일은 중앙본부가 되기도 원하지 않으며, 결코 그 어떤 모델도 수출하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들 고유의 전통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방주의적 경험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서방측에서는 통합에의 길로 꾸준히 나아가면서도, 과도한 중앙집권주의로 치달는 것은 저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생성된 동구권 국가 들은 연방주의적 협력형태를 모색하여, 이를 통해 이웃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자결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성과 다양성을 결합시키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연방주의와 유럽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 본단의 극복에 기여하고 동구권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 스스로 서유럽과 유럽공동체에 결속되어 프랑스와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할 역사적 임무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호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동과 서를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일에게는 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로마협약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위해 단호하게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 III.

우리는 유럽 통합이란 목표를 위해 자국내의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동·서독지역의 공동성장을 통한 인간적인 생활상태를 창조하기

위해 경제적인 절제, 사회복지적인 공동체 의식, 민주적인 공동참여와 같은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간적인 생활상태는 위험천만의 장애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국내질서를 잘 정돈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민주질서 전체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와 같은 실례로서 경제상태와 외국인 문제, 폭력과 정치적 공동책임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주의체제가 무용지물로 사라진 이후 발생한 심각한 구조적응에 따른 위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최악상태에 처해있으며,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는 독일전체 GNP의 7% 밖에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 2,000년까지 동·서독 지역간의 평준화가 달성되기 위하여서는 연간 15%정도 경제성장이 이룩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정도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달성된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독에서 수십년동안 국가와 단체임금협약 체결 당사자들이 서로 “분배하면서 성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곧 각 정치지도자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동·서독간의 경제능력의 격차가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 대대적인 재정이전지출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그 재원의 조달과 관련 심각한 갈등이 노출될 것입니다.

비록 서독경제가 통일때문에 호황을 누리기는 했지만, 오로지 서독경제의 능력이 계속될 때에만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서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미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복지적 기여금 지불을 통해 통일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낮았을 때는 구 서독지역의 연대기여금을 올렸다가, 다시 실업률이 높아진 지금 연대기여금을 폐지 ('92.6.30 한시적으로 1년간 인상한 것을 폐지함)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독 신연방주의 재건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우리 자손들의 과제가 아닙니다. 향후 공공부채만으로는 재정이전에 필요한 자원은 조달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절약을 통해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나아가 공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연방정부가 앞장을 서야겠지만 연방정부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정부와 지자체가 전체자원 조달에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하는데, 비록 직접적인 양자간 지원형태라는 좋은 선례 (“구 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에 있어서 연방과 주 지자체간 협력을 의미함)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동독과 서독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부자는 현실적으로 급선무이나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우선순위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독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자본의 부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잔재, 소유권 문제, 지리한 행정사무와 같은 장애요소의 대부분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동독의 개별임금 비용은 서독과 비교할 때 2배나 높습니다. 임금이 생산성보다 훨씬 앞지르게 된다면 기업체는 어떻게 경쟁력과 고용능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독측에 의한 개인적 부자열기는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독지역간 생활수준의 신속한 평준화라는 목표와 경제적 활성화라는 목표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긴장관계를 해소하여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어떤 묘책은 없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체를 위협스럽게 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구 동독지역의 실업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향후 5년동안 실업자들이 감내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며, 사회정책적으로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 구 서독지역 주민들의 긴축과 희생을 통한 구 동독지역에 대한 향후 재정이전 지출액은 막대할 것이므로, 향후 5년간은 서독주민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 이상의 생활수준향상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동·서독 지역간 생활수준의 평준화 목표가, 책임있게 이야기할 때 워낙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5년내에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동·서독을 막론하고 물질적인 것만이 생활계획 수립의 유일한 특징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각종 정서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성과와 사회복지적 안정이 뜻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풍요란 자연, 주택, 자유가 개인자신의 소망과 목표로서 추구되고 인간적 환경으로서 마련될 때에야 달성됩니다.

우리는 동독에서 새로운 자영업을 경영하려는 용기있는 사람들과 소속기업의 생존을 위해 임금인상을 사양하는 매우 훌륭한 모범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분배부쟁에 의한 단기적 이득이 장기적으로 보면 희생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독에서 행해진 여론조사의 보고에 따르면 시장경제가 동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유와 풍요를 원했지만 경쟁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체제에서 누렸던 안정된 안도감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경제체제로 인한 위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와 같은 결론을 잘못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한 결론에 따르자면 안도감의 댓가는 독재요, 자유의 댓가는 곧 늑대사회입니다. 그와 같은 상부적인 말들이 통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분배의 부쟁, 단체협약 임금제결 부쟁, 정당간의 경쟁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와 발전이란 오로지 숫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수능란한 마술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성과 독자성이 더욱 신뢰되는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훌륭할 것입니다.

#### IV.

외부로부터 몰려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바로 우리의 민주 질서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독일계 주민들, 우리가 초청해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 전쟁지역으로부터 오는 피난민
- 고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 가난하기 때문에 모국을 떠나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풍요로운 지역으로 몰려들려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화폐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소용돌이가 있었는지를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동·서독간 평준화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의 의무가 분명한 이상,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떠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민족의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가간에는 큰 빈부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은 개방되어 있거나 통과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역사에서 항상 보듯이 그 결과는 민족의 이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족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없으며, 단지 질서정연하게 유도하고 서서히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경제가 꽃피는 지역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만큼 주거와 생활의 공간은 좁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민족이 서로 이웃하여 살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있기 마련이고, 이방인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분별력과 법치국가형성과 인도주의를 위한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그의 소설 “성채”(Das Schloss)에서 얼음장같은 추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이방인으로서 거부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K 라는 측량사를 향해 토박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궁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온 것도 아니니.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유감스럽지만 당신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방인 . . .”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 1 조에는 우리가 무엇때문에 외국인을 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한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라고 !

자국민과 외국인은 우리의 법치국가적 질서하에서는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사태가 실질적인 해결책모색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벗어나거나, 자국민의 참울성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바로 주택난과 실업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이주민 문제가 불가피하게 심각해 집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법률과 우리의 생활양식을 따르라는 요구도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독일에는 유럽의 다른 국가 전체보다 훨씬 많은 망명신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망명허용절차를 현실적으로 개혁하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기본법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논쟁은 사태가 긴급한 만큼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에 관한 진지한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논쟁이지 당리당락적 입지강화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예민한 분야를 놓고 상대방을 헐뜯기만 하면 피차 서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이미 주의회선거를 통해 익히 배워왔습니다.

망명신청자의 운명을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호한 결단이 단지 문제전체해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주문제의 각종 원인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외부로부터의 이민쇄도를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민쇄도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수치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약 600 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중 90 % 이상은 망명신청자가 아닙니다.

독일에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성가신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독일 경제의 지주이자, 우리의 사회복지 체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외국인중 절대다수는 독일인들에게 알선될 수 없는 직장을 갖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이 없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없으면 독일인 근로자들의 직장도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풍요를 위해 베푸는 긍정적인 기여는 매년 망명자들을 위해 위해 지출하는 65 억 DM 이나 되는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난민들의 고국으로 보내져 그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되는 돈들은 이곳 독일에서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성장관이 백여개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내무성장관이 독일에서 망명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두배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진국 개발정책의 개선이 곧 외국인 쇄도를 제한시키는데 도움되는 기여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전체조감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악성구호를 만들도록 해줄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외국인과 그들의 숙소에 대한 공격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며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적 난동은 우리로 하여금 격분케 합니다. 독일의 권익을 위해 그와같은 폭력사용을 두둔하는 사람은 우리 민족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독일이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자기주장의 관철 또는 무방비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분노나 공포심으로 위협하기 위한 상투어도 아니요 구타봉도 아닙니다. 가차없이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폭력행위는 우리 모두에 가해지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외국인에 대해 야만적인 침해행위를 가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공정한 외국인 기자의 그러한 보도를 읽고 우리 스스로를 자위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을 합리화하는 등가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일 새로이 일어나는 난동이 불가피하다는 기본으로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거나 마비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찰만 불러서 모든 것을 공권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또한 서로에게 법치주의국가적이고 인간적인 민주주의를 보호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시민의 용기를 보여줄 때 경찰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또 다시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

#### V.

민주국가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만이 모두를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도급 인사들인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문제해결이 비단 우리 정치가뿐만 아니라, 유권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내적인 정신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은 정치적인 의사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우리의 정당제도는 어떻게 변경할 수도, 변경되어서도 안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허용한 권력을 책임감있게 행사하고, “옳다”고 주장한 것들은 행동에 옮기면서, 필요하다면 유권자의 표를 잃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각 정당들은 그들의 신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통일과정에서 많은 동독주민들에게는 정치활동자체가 전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지배했던 SED 라는 공산당을 통해 그들은 전혀 민주적인 공동결정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의적인 권력행사만 능사로 삼는 정당이 아닌 정당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정치인들은 책임감있게 이들을 인도해야지 유권자들의 표만을 의식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서독지역의 유명한

정당한 한 명이 유력한 일간지에 다음과 같이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술집의 단골 지정탁자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자만이 그 주에서 다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으로는 결코 민주적인 신뢰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발상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국가형성의 자양분이 되는 자유는 단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는 공동책임을 의미하며, 각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인권보장이자, 우리의 기본법은 애석하게도 이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지만,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의무수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통독으로 인해 구 동독지역에서는 그토록 열망하던 해방으로부터 해방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방이 이제 다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방어하려는 이기주의적인 해방으로 이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더 많은 연대의식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최대의 해결과제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수많은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보스니아 난민들을 돕거나 겨울철을 맞는 러시아인들을 돕는데 있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내적인 통일 달성을 위해 이름없이 개인들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국가는 그 성립의 본질적인 전제조건들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에 속하는 것 중에 국민들간의 공통의 믿음과 행동양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단순한 중앙 서비스 기구 이상의 것입니다. 국가는 우리의 욕구충족만을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며 우리의 불만족 상태를 채워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없게 되며, 국가를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가는 우리 자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위 가족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존엄성이 무엇이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공동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페스탈로찌가 이야기했듯이 모범을 보이는 것과 사랑입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을 면하려고 하는 사회는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인 국가는 주민들의 동참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의 의무를 지닌 자들은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관찰시키고 모든 폭력행위에 대항하면서 우리의 민주적인 질서를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는 방어되고, 우리는 책임있게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참을 수 없는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유대관계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들에게 이러한 유대관계가 생성되도록 도와 줍시다. 우리 모두 방황하는 젊은 세대가 그 어떤 유대관계도 느낄 수 없는 세계속에서 성장되도록 그곳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도록 합시다.

국가내에서는 또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언론매체가 있으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책임감있게 이용할 수 있는 조직과 걸사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와 매체들은 그 구성원들이 자기이익만을 위해 악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책임감있게 활용됩니다. 그와같은 것으로는 정신적 지도자와 종교단체도 있는데 그들의 기여는 우리 사회의 윤리정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너무 침묵만 지킬 때도 혼합니다.

우리는 국가적 봉밀을 달성했습니다. 과거 몇십년동안의 경험과 현재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로 인해 우리들은 내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들의 편과 선한 자들의 편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 서독지역 사람들은 선생이고 구 동독지역 사람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상호 내적인 접근을 통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상호접근이 지금 필요합니다.

독일 애국가의 첫귀절인 “화합” (Einigkeit)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통독 2주년 콜 수상 기념사

이 자료는 '92.10.3. 통독 2 주년을 기념해 콜 수상이 독일 TV 를 통해 발표된 연설문 전문을 번역한 것임.

국민여러분 !

우리는 오늘 국경일에 지난 2 년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조국에서 “통일과 정의와 자유”가 실현되어 왔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지난 2 년동안 독일내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다른 세계 여러나라에서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동·서진영의 모든 이웃나라들과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설 연방주민들의 생활조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소득과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연금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화, 도로,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건설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공업, 상업, 제조업 분야에서 현대적인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재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신설 연방주(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히 본인에게는 통독후 지난 2 년간이 커다란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본인은 신설 연방주의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 적지 않아 두려움을 가지고 -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우려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미래를 향한 전환점을 잘 설정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상호접근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이러한 작업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그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공동의 과제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반유대주의는 우리 조국을 위해 하나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극좌파와 극우파는 우리의 지난 세기 역사가 잘 보여주듯 우리 민족에게 늘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다른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그 기회를 잘 활용만 하면 행복한 미래를 손에 쥌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과 연대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기의 능력을 훌륭하게 발휘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이웃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통일독일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된 유럽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자유가 실현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통독 2주년 관련 언론 반응(I)**

1. 이 자료는 독일통일 2주년과 관련한 독일 우수언론의 반응 (사설, 특집기사, 논평)을 당관이 전문 번역한 것임.

2. 목 차

- 인내를 통한 통일  
- FAZ 지 -
- 독일통일과 경제난국으로의 전환기  
- Frankfurter Rundschau 지 -
- 작센주지사 Biedenkopf 의 통독 2년 평가  
- Die Zeit 지 -
- 누가 국민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  
- Die Zeit 지 -

## 이내를 통한 통일

- 92년 10월 2일자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지 -

통독 2 주년을 맞는 오늘, 정치가, 언론인, 그리고 기타 관련인사들은, 적응과정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였으며, 시한을 너무 짧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내게 될 것이라던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과오의 책임이 정부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계산착오를 하였기 때문이다.

얼거할 이유는 많다. 우선 가장 주된 이유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정면충돌하였으며, 두 세대에 걸쳐 쌓여온 이질감이 수년만에 극복되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문제로 발전된 것이다. 두번째로는 자기기반을 갉아먹는 경제구조(Substanzverzehr)는 동독전역에 만연해 있었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파괴적이라 재건사업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영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냉혹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통합상의 이러한 문제점은 독일 이쪽과 저쪽 모두에서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구 동독주민들의 하소연은 서독의 질서, 기관, 법률 및 관습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 외에도 지지부진한 구 동독재건에 대한 실망, 적응에 따른 과부담, 구 정권 범법자들에 대한 소추와 균형있는 행정업무가 법치주의원칙에 의해 지나친 구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 서독민들에게는 희생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란 실업률 인상, 범죄율 증가, 이로 인한 불안 증가 등의 부정적인 면의 증대밖에 없다는 등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서부독일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재정이전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 동독부양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독일에서의 경제구축이 빨리 진척되지 못하는 현실, 개인주도력의 부족,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청은 드세지고 있으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어가는 모습상, 심리적 이질감의 심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사회분위기가 극단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는 사태 등에 대해 서독 주민들이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잡지사들처럼 매주마다 이에 대해 한탄을 늘어 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 리는 만무하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잘못이 이로 인한 것이라면, 해결책은 바로 그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동시에 서부독일 경제의 불황이 진취성과 사업의욕을 둔화시키고 신설 5 개주에 대한 부자에 제동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 동독에 대한 국가지원이 어쩔 수 없이 장기화되리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세혜택조치와 기타 부자촉진수단에 의한 간접육성 방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설 5 개주 공공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사업에도 -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훨씬 더할 것인데 -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다시 말해 최소한 5년 이상이 지나서야 판가름날 통일외 성취여부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며 그 분담문제를 또한 어떻게 처리하는가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독일문제 = 금전문제”란 등식은 너무도 진부한 표현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수년동안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 등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저지른 잘못이라면, 통일비용을 계속해서 앞잡아 보았으며, 희생의 필요성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 결과가 어떠한 지는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90년 여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을 흥분케 하였으며 강한 동족의식을 불러 일으켰던 통일이란 역사적 사건이 이제는 일상적 걱정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우수에 빠져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은, 당면 과제가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 부당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에따라 이제까지의 변영과는 달리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서독사회가 겪어야 할 긴축조치로는 조세, 사회부과금, 물가, 집세, 금리 등의 인상과 빠듯한 정부예산 그리고 국가복지사업의 보류 따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카탈로그가 과도한 희생의 명세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이 본제의 핵심이라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전체독일에 소요될 재정수요를 분명히 확인하고, 소득과 분배의 가능성을 제대로 측정해야 하며, 지원 및 비지원 대상을 정확히 판가름 내릴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들 입안은 나라살림을 역척스레 꾸려가리라는 절약예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며, 또한 이는 논의중인 연대협약 (Solidarpakt) 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협정이 - 중차대한 범국민적 노력경주에 - 노조와 기업주들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상과 같은 총괄적인 계획안을 현 정부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희생을 요구하는 자는, 그 필요성을 납득시킬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개방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살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성취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선 계획과 지휘가 따라야 한다. 정신적인 지원 또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소홀해져서도 안 된다. 서쪽 주민들에게는 희생과 불편함이 한동안 계속 따르리라는 점과, 동쪽 주민들에겐 그들의 소망과 요구가 하루 아침에 충족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독일인들은 서로를 위한 인내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적통일을 향한 통합 2 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

## 독일통일과 경제난국으로의 전환기

- 92년 10월 2일자 Frankfurter Rundschau 지 -

게랄드 탈하임과 힌치히 쿠에스너는 지혜의 샘을 발견하였다. 작센과 메클렌부르크 출신 두 사민당 정치가는 엘베와 베라 저편의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묘방을 제득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최근 본에서 “신설주는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라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독으로 이전하는 동독인에게 500 DM 의 장려금과 개인주택 마련용 무이자 융자라는 혜택을 베풀자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로써 “저절로 굴러가는 서부의 부흥”이란 것을 이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의 정치비전 역시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이들 국회의원들은 피력하면서, 이에 따라 전 동독지역은 낙원같은 전원풍경을 가꾸게 될 것이며, 식민문제는 차후에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덧붙여 펼쳐 보였다.

이는 두말할 나위없이 신랄하기 짝이 없는 골계요, 냉소와 반어로 가득찬 시평일 뿐이다. 문제는, 장벽이 무너진지 어언 3년이 지난 오늘 다른 많은 동독인들에게도 탈하임과 쿠에스너에게서처럼 정부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두 의원은, 고향의 사회·경제문제에 대해 본의 연방정부와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란 기대를 포기하고 있다. 다른 측들은 오래 전부터 아예 입을 뿔 생각도 않고 있다. 요컨대 이들에게는 말보다도 폭력이 더욱 설득력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스톡에서부터 코트부스에 걸쳐 자행되는 극우파들의 난동이 무엇보다도 경제적 참상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이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매월 발표되는 실업통계가 이 주장이 억측이 아님을 극명하게 입증해 보인다. 한때 구 동독시절 일천만을 헤아리던 일자리 수가 현재는 반 정도나 줄어들어

버렸다. 하지만 공식통계는 실업자수를 약 150 만 으로만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거의 50 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부독일로 넘어 갔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원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 대열에 끼이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가 퍼 주는 샘플을 마시며 살고 있다. 80 만을 헤아리는 조기연금수혜자가 그러하며, 30 만에 달하는 단축조업자들과 약 50 만에 이르는 고용창출대책 해당자들이나 직업연수생들이 또한 그러하다. 물론 이들이 전부는 아니다. DIW 와 세계경제연구소등 유력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련의 기업체들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계속적인 해고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내로 만도 신탁청 산하업체들 중에서 25 만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정부 제출 보고서의 서두에서 이들은, “화폐통합 2 년 후 동독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산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제시 통계수치는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 GDP 는 2/4 분기 중 500 억 DM 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11 % 정도 하회하고 있으며, 통합전 수치와 비교하면 무려 절반이나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DIW 추정에 의하면 “동독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 오던 산업생산량은 현재 통합전 수치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계속 내려갈 것으로 내다 보인다. 주원인은 수주격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2 년에 가서는 현저한 경제성장이 있을 것이라던 종전의 예상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구 동독 경제재건이란 요원한 말이다.

미래의 번영을 다짐하는 일부 특수 투자산업 설비들만으로는 - 실례로 일주일전 수상이 친히 개업축복을 기원한 바 있는 아이제나하의 오펔 자동차 회사를 들 수 있는데 - 이 상태를 뒤집어 놓기가 힘들다. 다른 경제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의 경우, 과거 80 만을 헤아리던 일자리 수가 현재는 1/4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통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품목별 판매시장의 경우, 그 열매는 모두 서독 대기업측으로만 돌아가고

있다.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종에서도 신규사업체들이 늘어났지만, 상당수가 도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축업종만이 빈약하나마 나름대로의 호경기불 보여주고 있다. 자주 지적이 되었으면서도, 정부가 해결지 못하고 있는 투자장애 요인들 (미해결 재산문제, 과중부담을 안고 있는 행정업무, 지문한 인·허가 절차, 낙후한 사회간접사설 등)로 인하여 이들 업종 역시 곧 애로불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독에서 사회주의가 막을 내린지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매일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욱 많으며, 구축보다는 붕괴가 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아직도 일부 집권여당 정치가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다. 시장(Markt)과 서독 돈(Mark)이 조만간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라던 정치가들의 호언장담이 완전 오산으로 판명되고 있다. “제2의 독일의 경제기적”이란 요원한 바램일 뿐이다.

구 동독경제가 전통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동유럽시장은 공산주의가 하나 하나 무너져 감에 따라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서방이 곧 신설주 생산제품을 위해 새시장역할을 맡게 되리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신탁청에 의해 이미 민영화된 기업체나 아직 처분 대기중인 기업체간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양쪽 모두 수주청약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부르크 주변 산업기지 생산업체나, 동베를린 소재 전자산업, 메클렌부르크의 조선업,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주의 철강업, 튀링엔주의 섬유업 혹은 작센·안할트주의 화학업종 등과 같이 우세한 업종들마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뒤쳐져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 단골 손님들도 제한된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이제는 동독에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별로 가격차가 나지 않는 서방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보조금이 뒤따르고 있긴 하나, 별 싹조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 동구권무역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경제연합 동부위원회 의장 오토 볼프 폰 아메롱엔은, 일부 정치가들이 부르짖는 적자사업 철폐론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들도, 시장경제체제로의 동유럽개혁 움직임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 통독과정의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첩경이 된다는 인식을 근자에 천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제까지의 노력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Bonn 정부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 동독 경기부양책 역시 지금 수준보다 더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관계 당국자들은, 사회질서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요청을 물리쳐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잔류 산업체들은 폐기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조정책 및 재정비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최근들어 자민당 출신 뮐러만 경제장관도 깨우치고 있다. 나라 전체가 황폐해지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음을 반증해 주는 일례이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과 신탁청의 바겐세일 공세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국유기업체들 (9천여개는 이미 민영화 되었음) 중 4천여개가 여전히 미처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 중 524개의 사업체는 신설 5개주 경제의 구조적 명맥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다. 이들 사업체는, 이를테면, 최소 250 명 이상의 종사자들을 각기 거느리고 있는데, 이는 신탁청 휘하 67 만 노동인력중 3/4 을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신탁청의 민영화 업무가 끝나는 '93 년 말에 가서도 일부 업체는 적절한 인수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불황으로 빠져 들어갈 조짐이 있는 서부독일 경기의 현 침체상태는 기존 투자가들의 매입의욕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정책방안에 따르면, 미처분 사업체들은 결국 폐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자생존의 냉혹한 시장원리가 정치적 동의를 얻어내게 될지는 이미 의문시되고 있다.

신탁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업정지와 대량해고사태에 신설 5계주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직장 근로자 대표들이 격분하여 시가를 행진하였을 때, 풀 수상을 비롯 필레만 경제장관과 브로이엘 신탁청장도 이점을 분명히 감지했을 것이다. 프라이탈 소재 철광사업소와 프렘이츠 소재 섬유업체 폐쇄안 철회사례는, 공장점거라는 마지막 실행행사를 포함한 일련의 압력수단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차기 국회의원선거는 먼 미래사가 아니며, 최근들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음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경제이성의 임시미봉적 위기타개방안은 더 이상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 로스복과 주울을 잇고 있는 기치가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려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을 유인할 수 없다면, 기업체들에게 한시적 국가보조금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특정지역의 취업보장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극적인 구조개편에 따라 뒤쳐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적어도 과도기간에 한해서만이라도 기업체들은 임금비용 상쇄 보조금, 조세혜택, 판매와 재정확보가 필요한 자원등을 연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주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때 비로소 기업정비와 질 좋은 생산품목 개발 및 새로운 고객확보 등이 결국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 동독 국영업체 정비사업에는 명료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방정부가 독주하는 민영화 조치를 주도하는 신탁청의 현행민영화정책은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탈선화의 조짐이 현실성을 띠게 됨에 따라 뒤늦게서야 정부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신탁청은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정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장관 필레만도 강조한 바 있다. 중앙통제체제를 벗어나서 지역정책상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주정부가 이러한 정비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 장관의 견해처럼 -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한 실례로

차이스사(동부독일 류링엔주 소재 유수 광학업체: 역주) 처분문제를 둘러싸고 류링엔 주정부와 현 시장 로타 슈페트가 보여준 정비사례를 들 수 있다. 결국은 그 비용을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러한 30 억 마르크 상당의 “호화판 정비사업”이 보편화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빠듯한 정부예산을 전망있는 회사에 집중 지원토록 한다는 방안은 올바른 처사이다.

작센주가 제일 먼저 정비업체 명단을 작성해 보였다. 구제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은 너무도 무자비한 처사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루어져야 하는 바, 이때 신탁청의 방안과 동 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사업체보수방안이 그 심사기준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정치가, 노조단체, 기업협회, 경제위원회 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지역별 연대협정(Solidarpakt)은 불가피한 결정사항들을 현지에서 직접 관철·이행해 나가는데 큰 몫을 할 것이다. 공고하고 장기적인 정비방안이야말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딜레마, 즉 빠듯한 재정수단을, 다른 곳에 유지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효용이 더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지금, 여기에 쓰지 않으면 안되는 진퇴양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과제를 신탁청이 맡든, 아니면 주가 그 임무를 위임받든지와는 상관없이 통독비용이 연방재무장관의 제시액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물론 재정업출방도를 둘러싼 혼란에 전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탁청 하나에 의해서만 '95 년 연방정부가 떠맡게 될 채무가 공식적으로는 2 천 6백억 마르크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로는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피살핀 데를레프 카알스텐 로베더 초대 신탁청장에 의해 제시된 바 있었던 6 천억 DM 상당의 추정액과 맞먹는 것으로서, 단지 차변·대변이 바뀌어져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물론 이것이 통합과정에서 드러나는 많은 재산상의 오착중의 일례에 지나지 않음을 끝으로 지적해 둔다.

## 작센주지사 Biedenkopf 의 통독 2 년 평가

- 92년 10월 2일 "Die Zeit" 지 -

I.

우리는 통일을 맞은지 벌써 2년이 되었다. 2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전체가 온통 변해버렸다. 1,600 만명의 독일인들이 다시금 자유를 되찾았고, 밀고나 압제같은 것은 사라졌다. 장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베를린은 다시금 수도가 되었다.

동독인들에게는 세계는 활짝 열려 수천명이 신세계를 찾아나서고 있다. 그러나 장벽이 개방된지 2년이 가까와 오지만 대변혁이 성공한 만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통일의 환희와 도취감 대신 환멸과 실망이 드러나고 있다.

독일인들에게는 통일의 도취감에 심취해볼 계기가 주어져 있고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통일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도취감을 만끽할 수 없게 되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지 3년이 되는 오늘날 여혼은 최악의 상태에 달했으며, 독일인의 75%가 국가의 현실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은 실업문제, 화폐가치 하락, 경제성장의 둔화, 외국인의 쇄도, 범죄, 마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중 대부분은 독일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 마르크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화폐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인들의 절반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독일통일의 환희가 원만하게 계속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환희가 계속되기에는 독일과 유럽의 대변혁에 따르는 난제와 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론 평화스런 재통일이 달성된지 2년이

지난 오늘 최악상태의 여혼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은 지금까지



예상외로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질서와 사회질서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과 같은 각종문제가 산적해 있는 등 엄청난 변화에 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독인들에 의한 대규모 소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통일을 원했고 그들의 생활에 변화가 올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단한 적응력을 발휘했는데 동독의 각 주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훌륭한 변모에 놀라게 된다. 비록 수십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오늘날 수천에 달하는 기업체, 수공업체, 제조업체가 새로 설립되었다. 연방정부와 서독의 각 주는 수천억 마르크나 되는 재원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는 복지사회제도의 보험공동체를 통해 달성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이웃나라들은 독일통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공동체는 독일통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독일인 전체의 여론을 좌우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여론의 최악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한 원인중의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함으로써 끊임없이 대두하는 일반적인 난경이며, 다른 하나는 통독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긴장감과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확한 평가와 역발전 현상이다.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독일통일이 역사상 유일무이한 것이자 매우 복잡다단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에 그다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동독의 재건이 서독인들의 권익과도 직결되며, 통독의 부담이 독일 전체를 현대화시키며, 미래의 임무를 준비해 주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서독인들에게 설득할 수가 없었다.

Kohl 총리는 통독 2주년을 맞아 연대협약(Solidarpakt)을 제창하고 있다. 정치계, 경제계, 노조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독일의 위상확보, 90년대의 경쟁력 확보, 동독재건,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자체간의 새로운 재정제도에 관하여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성공적 진행여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달려있다.

1. 현재 우리가 처한 상태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과제에 대한 합의(인식의 일치)
2. 현재 통독과정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역발전 현상의 시정
3. 독일전체에 대한 통일의 당위성과 실익에 관한 범국민적 대화

## II.

우리가 오늘날까지 독일통일의 완성을 범국민적 과제로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과제로 형성해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초기단계에서의 실수였다.

필자는 이미 1989년 12월 Leipzig 대학에서 행한 강의를 통해 동독경제의 현대화는 곧 동·서독의 공동과제로서 동·서독 경제의 분담능력의 차이에 비례하여 양국의 출자금은 1:10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90년 2월 필자는 동독경제의 정비와 현대화가 서독자체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동독경제의 현대화와 관련된 비용 때문에 희생이니 지원이니 하는 따위를 거론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상 독일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동·서독에 공히 이익이 올 것인 바, 굳이 희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소비절약으로 미래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의미의 희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동독재건에 대한 서독측의 대등한 참여가 불가피한데,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볼때 전쟁피해로 인한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사안이기 때문이다. 그와같은 전쟁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모든 독일인들이 동등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생산능력의 파괴와 낙후 뿐만 아니라, 건물이 낡고 환경손상으로 황폐해진 농지는 물론, 인간에 대한 국가권력의 압박 등도 포함된다. 모든 독일인들은 실제 분담능력에 따라 전력을 다해 전쟁피해의 경제적 재건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이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미 경제통합과 통화통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조약 체결에 관한 회담시, 동독재건은 일차적으로 동독인들의 과제이기에 서독인은 그 능력의 한도내에서 동독인들을 도와야 하므로 독일전체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짙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회담에서 de Maiziere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을 확인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독일동부의 국가, 문화, 경제, 사회복지, 생태학적 질서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 독일전체의 과제이다. 기존제도 때문에 일어난 손상과 부담은 기존제도 자체와 마찬가지로 패전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현재 동독에 있는 독일인만 그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모든 독일인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과제의 비용은 예측을 불허한다. 따라서 비용산출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연방정부를 비롯, 동·서독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담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치가 없게 되면, 동독은 끊임없이 추가부담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과제의 전독일적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동·서독 관계는 그 절박감 때문에 점점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완성과 동독의 재건을 함께 결정하고 필요한 능력을 함께 발휘해야할 과제의 범위를 설정할 만한 사전대책이 제1차 국가조약에도 통일조약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과제의 규모나 재정상의 위험부담이 당분간 예측을 불허함을 모든 당사자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 오늘날에 와서야 과제가 전독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아직도 끊임없이 필요한 능력을 각출해 내라는 부담이 동독인들에게 지워져 있으며,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해결 가능한지 결정할 때 아직도 서독인들은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과제의 분담”으로 인하여 동·서독 독일인들은 점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비록 이같은 부담의 증가가 동·서독간의 여론악화의 주원인이기는 하다. 이는 또한 서독인들에게는 막중한 부담의 증가라는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동독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산출해 보아야 한다. 오로지 공동책임하에 통독의 부담이 결정될 때에만 통독의 성과를 공동으로 누리게 될 것이며, 전독일적 합의는 물론, 이와 함께 전독일의 정체성이 발전될 수 있다.

오직 독일전체적 정체성이 확립될 때에만 독일통일의 완성이 지금까지의 서독 국민소득의 분배가 낮은 경제적, 사회복지적 결실이라는 정치적 효력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방법이 계속되는 한, 아직도 상존하는 분단은 극복될 수 없고 그 심연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오늘날까지 동독재건에 필요한 예상비용의 근사치조차 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가 올 수년간 동독의 각 주가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동독정권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잔재가 얼마나 심각하며, 동독의 인프라스트럭처 부재상태를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지 2년전보다 훨씬 잘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독일통일의 완성에 매우 장구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10년 내지 15년에 걸쳐 국민총생산액의 약 5%가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이 현재 절대적이다. 그러나 독일 전체적 과제에 관한 경제적, 사회복지적, 생태학적, 재정적, 시간적 차원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결정해 보려는 의지가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는데, 그래야만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재정정책적으로 긴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의 원칙에 관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실제로 얼마나 중대한지 불분명하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없을 경우, 불안과 공포심만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유럽, 특히 동구권의 발전으로 독일인들이 당면하게 될 책임감 때문에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의 공포심 증가와 새로운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과제의 규모를 비롯하여 우리의 능력과 함께 통일이 독일전체를 위해 유익하다는 계몽을

### Ⅲ.

통일과정의 주요 근거는 종전과 다름없이 통일조약이다. 통일조약은 통일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목할 만한 우월성이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오늘날 통일조약은 통일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련의 제도적 결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도적 결함은 통일조약을 근거로 하지만 잘못임이 입증되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수정되기는 무척 어렵다. 그렇지만 제도적 결함의 수정은 연대협약의 지원을 받아 단기간에 걸쳐 해결할 수 있다.

통일조약은 동독 공산당의 과거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수년내에 경제 부흥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동독의 각 주가 서독의 생활수준과 생산력 수준에 비교적 신속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통일조약중 수많은 개별규정은 이와 같은 기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독일통일 기금이 그중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주정부 재정조정 대신 1994년까지 동독의 각 주로 하여금 필요한 재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년 350억 마르크에서 1994년 100억 마르크에까지 달하는 당초 예상 지불액을 편성할때 동독의 각 주가 이 기간 이내에 필요한 담세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오로지 이렇게 해야만 서독의 각 주들이 이미 선언한 바 대로 1995년부터 동독의 각 주들도 재정조정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미 1991년중에 예정된 재정이전이 전연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현재 긴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양적인 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독일통일기금의 재정이전 능력이 현재 매우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만일 동독의 각 주가 현행 결정이 변하지 않는한 긴요한 국가임무와 부자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서는 1993년중에 300억 마르크(개인당

1,650 마르크)나 되는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 이는 곧 Nordrhein-Westfalen 주가 260억 마르크, Baden-Wuerttemberg 주가 165억 마르크나 되는 신규채무를 짊어지게 됨과 필적하는 것이다. 이 주들은 독일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 정도 채무를 결코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독 각 주가 안고 있는 이러한 부담을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직도 동·서독이라는 범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독일전체라는 사고방식이 적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현재의 중기적 재정계획이 계속되는한 1996/97년이 되면, 동독의 각 주는 현재 Bremen과 Saarland가 처한 것과 비슷한 예산의 위기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오늘날 투자자들은 위협적인 채무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면서 매력적인 산업최적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다.

그와 같은 발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체제의 결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역시 동독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현실에 맞추어 기존규정을 부단하게 적응시켜 나갈 것이 요구된다. 대변혁 이전에 있었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벌어졌던 분배투쟁과 같은 것으로는 통일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

서독의 법률질서를 아무런 제한없이 동독에 전용한 결정 역시 또다른 근본적 결합임이 드러났다. Schaeuble는 법률질서의 전용에 따르는 변화충격이 경과 규정과 더불어 완화될 것이라는 의도를 초기에 갖고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이와같은 의도는 서독의 관료행정과 더불어 de Maiziere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었다. 동독시민에 대한 특수규정은 일종의 특권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던 것이다.

오늘날 서독법률의 동독으로의 무조건 전용은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동독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사고방식의 전환이 강요되었고, 안정감 대신 법적 불안정이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까지 동독 각 주의 주민들에게는 법률을 인식하고 그 효력을 신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제도가 그들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기분은 무엇보다도 서독의 법률제도가 직접 전용되었음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것은 소유권제도에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상전에 반환이라는 기본원칙의 적용은 현재 완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에 장애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세입자나 주택소유자로서 기존제도와 기존제도의 유효성만을 확신하던 사람들이 당면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크나큰 작용을 했다. 수많은 동독인들은 지금까지 소유권제도를 보호용이 아닌 위험스런 법이라고 배워왔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나타난 것은 서독의 완벽주의 법률제도는 동독의 재건을 적절하게 해주는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서독에서는 정의 때문에 또는 주요공공재산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통하던 법률이, 동독에서는 긴급한 과제를 해결할 때 지장만 초래하는 규정인 때가 흔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행정절차와 인허가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경과규정을 설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두가지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서독측에서는 부단한 저항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동독재건 목적을 위한 간소화는 각종 사안에 걸쳐 하필이면 그와 같은 적용이 꼭 동독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의 불씨를 던져준다. 사무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소유계급이 존재하는데, 그 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연대협약의 범주내에서 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긴급하다.

#### IV.

통독의 중간결산은 다음과 같다. 현재 통독에 따르는 호기와 전망은 문제점과 난점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는 좋은 진전이 아니다.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거대한 과제를 정복한후 서유럽의 중심에서 통일된 민족으로서 현대화할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기회를 맞고 있다. 본단이 동·서독에 공통된 특징으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서독의 기존특징을 통일독일에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완성 작업과 함께 새로운 통일관이 발전되어야 한다. 꼭 그렇게 될 때에야 유럽과 세계속의 우리의 위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통일국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통일이 달성된지 2년간을 돌이켜 보건대, 분명한 것은 서독이 그 시민보다는 정치조직과 사회조직에 남겨둔 난제이긴 하지만, 통일과 더불어 구독일 연방 공화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입(Beitritt)이란 용어는 법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통일은 구동독이 구서독에 가입(Hinztritt)한 것이 아니라, 분단되었던 2개의 독일이 재통합(Wiedervereinigung) 함으로써 새로운 통일을 달성한 것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타당치 않다.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정돈하고 동·서독 독일인의 절대다수가 무엇인가 그속으로 지참해야할 통일독일이라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것이 생겼다. 오로지 우리자신 속에 있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위기(호기와 위협)를 전독일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정치적 행동을 정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아직도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고 있는 깊은 굴이 메꾸어질 것이다. 오로지 그럴 때에야 우리는 통일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 누가 국민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 92년 10월 2일자 "Die Welt" 지 -

밖에서 관찰해 보나, 안에서 검사해 보나 통일이 된지 2 년후 오늘날 독일의 모습은 암울하기만 한다.

과거와는 달리 역사와 주변국가의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워, 두번째의 통일만큼은 대륙 중앙위치에 따른 지정학적 어려움을 결코 소홀히 함이 없이 진행해 나아가리란 기대가 컸었다. 이 독실한 기원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시장경제에 따른 국가통합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다 잘살게 되리라는 내적 통합에 대한 믿음 또한 그만큼 컸었다. 물론 이 그릇된 믿음이 산을 옮겨 놓을 수는 없었으니, 결국 동·서와 양 독일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던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제 환상은 쓰라림으로, 초기의 기쁨은 소외감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뒤바뀌고 있다.

독일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장벽이 쌓여지고 있다. 1990년 가을 당시 외무부장관 겐서가 유엔에서 자신만만하게 약속한 "정치적 귀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동안은 합구해야 될 것이다.

밤마다 드세지고 있는 정치난민들과 경찰에 대한 폭력 하나 어찌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독일의 평화유지능력이란 웬 말인가? 작센하우젠 소재 전 "유태인 수용소" (당시 집시들이 체류중이었음 : 역주)가 불타 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정치가들은, 그것도 이에 대한 외국의 반응에 놀라 때늦게, 상징적인 제스처어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의지할 바 없는 집시들을 돕기 위해 도대체 누가 발벗고 나설 것인가?

일련의 국수주의적 폭력행위를 놓고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는 주변국의 경우를 들어 상대화 시키려는 시도도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완벽에 가까운 이 혼돈을 활화상태의 치안부재를 민산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는 정치가들과 국민들의 여유, 이점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해석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극우테러단체가 저명인사에 대해서도 폭력을 가해야만 비로소 국가가 과단성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가?

통일이란 아름다운 그림을 망치고 있는 이러한 추한 험집은 독일내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최근 유럽인들의 반대소동과 독일측의 찬성고수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한가지 분명한 점은, 처음에는 독일정부가 통일비용을 독일인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와서는 사전양해도 없이 -통일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와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국제금리 인상이란 우회로를 뚫하여- 주변국들에게 통일을 위한 기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요컨대 독일은 힘이 있다고 -로널드 레이건 집권당시 미국이 그러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른 날도 아닌 바로 통일기념일에 독일정치를 대표한다는 한 인물이 “기적의 무기”라는 히틀러의 한 분신 앞에서 -우제돔(독일 북해 연안의 섬 : 역주)은 다시 우리땅 이라며- 술잔을 높이 치켜들려는 것을 간신히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연방은행의 실력행사와 UN 상임이사회의 조급한 가입요청은 이러한 우월성의 과시로 해석될 수 있다.

페넨데에서의 파티(좌절된 V<sub>2</sub>로켓탄 기념식을 지칭 : 역주)가 계획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각없는 행동이었는데, 이를 샴페인과 뷔페를 차려놓고 나치에 의해 살해된 강제노동자를 기리는 추모식으로 둔갑시켜 보려 했던 에리히 리들의 가증한 시도는 더욱 경멸스럽다. 그러나 보다 더 치욕스러운 사실은 정부 차관급인 이 무기로비이스트가 계속 관직에 눌러 앉아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의 날이 한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띠 수 있다면, 이는 서독은 물론 동독에서도 속고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통일과정에서 -신속한 통합외연- 거의 모든 일들이 잘못 진행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내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정치 선을 넘어선 사회전반에 걸친 도덕적 위기는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냉철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팎으로 뒤엉켜진 문제덩이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탄의 원인은 우리 독일인들이 -동이나 서나 마찬가지로- 자유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산독재 치하로부터 우리 동족이 해방되었을 때의 그 이루어 말할 수 없었던 흥분이 이처럼 흔적없이 사라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자유의 맛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물론 난민비호권(Asylrecht)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 역사적 유물주의는 여당 정치가들의 서슴없는 공약에 의해 그 사기가 진작되었는데,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판단은(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

도덕적 과오를 범한 자는, 언젠가는 결국 현실로부터 단죄를 받게 마련이다. 통독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위선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정치가들의 거짓공약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닌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야 했을 것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 늦지 않게)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야 할 것이다.

자유에로의 길은 짧았으나, 번영에로의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막대한 희생 없이는 양독간의 균형은 이루어질 수 없다. “꽃이 만발하는 풍경”, 그것도 4~5년 내로 실현될 것이란 연설은 그야말로 망발이 아닐 수 없었다. 동부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다 더 잘살게 될 것이며, 서부에서는 더 못살게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였다.

통일비용을 경제성장에 의해 별 어려움없이 단시일 내로 조달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서독인의 생각은 경제학상 이치에 맞지 않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만약 경제성장이 아닌 경기침체가 닥쳐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무엇보다도 덕적으로 그릇되기 짝이 없는 바, 그 밑바탕에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국민들에게는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비겁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비겁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희생, 노력, 무리한 옆길로 든 아니면 번지수는 불려도 결국 언젠가는 찾아들기 마련이라는 식의 오착이 빚어내는 정치적 부작용이란 왕왕 수습하기 어려운 것이 봉례이기 때문이다. 폴커 류에(현 국방장관 : 역주)와 하이너 가이슬러(현 기민당 원내부총무 : 역주)와 같은 기민당의 정치가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서슴치 않았던 “공정성 부재”의 문제 ; 동독인들의 사회심리학적 방향감각 상실이나 비스마르(동부독일 로스복시 근교의 소공업 도시 : 역주)로부터 바이마르(동부독일의 문화도시 : 역주)에 이르는 청소년 탈선사태에 따른 고층 ; 거리에서 자유로이 행해지는 폭력, 법치국가의 부분적 와해, 부지불식간에 팽배해지고 있는 극우화 현상 등에 대한 우려 ; 그리고 동·서 독일간에 없어지지 않는 차가운 이질감이 불러일으키는 경악 등등으로 표출되는 일련의 봉독관련 휴유증은 -그 원인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귀결을 시사하고 있으니, 이는 첫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힘들다는 사실과, 둘째, 한세대 이상 걸릴 내적통합의 역경이란 정치에 대한 신뢰없이는 더욱 험난해 질 수도 있다는 점, 세째, 진술치 못한 국가와 정치가들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사지 못한다는 경고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한 법이다. 통일을 원하면 (원치 않을지라도) 그에 따른 부담을 자신이 직접 떠맡아야 한다. 후손에게는 산더미 같은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주변국에는 고금리를 강요함으로써 세대간의 약조과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화약고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

동·서독인들간을 묶어주는 연대의식이란, 두 사회에서 이것이 동시에 실제로 이행되는 한에서만 구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득향상을 포기한 능력향상을 시현해 보일 줄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부독일은 서구와의 경쟁을 이겨나가야 하는 반면, 동부독일은 서쪽의 요청에 너무 설불리 적응해 가는 바람에 동구라파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양면부담을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을 도덕적 거림킴 없이 토로할 수 있으며, 동·서독간의 고통스러운 줄다리기 싸움을 신뢰와 설득력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정치가란 도대체 누구인가?

헬무트 콜 수상은 집권 10주년을 장식하는 화환들이 일단 시들해지면, 정부교체 없이는 나라를 작금의 환경으로부터 구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 곧 판명될 것이다.

물론 콜 수상이 -헛된 공약을 삼가해야 할 것이란 경고가 자신의 정치진영에서도 날아든 바가 있긴 했지만- 국민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끌고 있는 현 정부는, 통일과 관련된 위선과 모든 과오의 대명사로서, 사공을 갈지 않은 방향전환이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대신할 인물이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다. 다른 정치가들에겐 적어도 자신이 친 올가미에 자기 발이 묶여있지는 않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간과해서는 안될 점으로, 어려워지기만 하는 통독국면을 감안하여 의례적인 정당간의 싸움을 적어도 한동안 만큼은 묶어둘 수 있다는 슬기를 과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수상 퇴임요청이 시중에 회자되며, 여·야간의 대연정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물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 그중 한가지 -지금 정치 권력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흘러들어서는 안될 사실은,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하루 하루란 통일달성을 위해서는 소용없는 공일이며, 뱃사공 없이 떠도는 부유상태의 연속으로서, 이것이 결국은 독일내부와 독일을 에워싸고 있는 장벽을 더욱 높게 만드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統獨2週年 報告書(Ⅳ)**

---

印 刷：1992. 10. 20

發 行：1992. 10. 24

發行處：統一院 統一政策室

第 2 政策官室

Tel：720-2148

725-0762

---

〈비매품〉